

발 간 등 록 번 호

11-1140100-000006-10

2023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Corruption Risk Assessment Casebook 2023



국민권익위원회

contents

I

부패영향평가 제도 총설



1. 부패영향평가 제도 개요	6
2. 부패영향평가 기준	8
3. 부패영향평가 업무 처리 절차	11
4. 2023년도 부패영향평가 현황	15

II

제·개정 법령 평가 사례



1. 평가기준별 사례

① 준수

(1) 준수부담의 합리성	28
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30
(2) 제재규정의 적정성	32
1.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34
2. 청년기본법 시행령	38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41
(3) 특혜발생 가능성	44
1.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2.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9

2) 집행

(1)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55
1.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58
2. 공무원 재해보상법	61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66
(2)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69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72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75
3.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79
(3) 재정누수 가능성	82
1. 평생교육법 시행령	84

3) 행정절차

(1) 접근의 용이성	89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1
(2) 공개성	93
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95
2. 안보범죄등 대응업무규정	97
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9
4. 소방공무원 징계령	100
(3) 예측 가능성	103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5
2. 수산업법 시행령	108
3.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110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2

4) 부패통제

(1) 이해충돌 가능성	115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7
2.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122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124
(2)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126
1. 주택도시시기금법 시행령	127
2.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0
(3)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134
1.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136
2. 도서관법 시행령	139

III

참고자료



1.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144
2.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153
3. 관련 법령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	168
2)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171

PART

I

부패영향평가 제도 총설

1. 부패영향평가 제도 개요
2. 부패영향평가 기준
3. 부패영향평가 업무 처리 절차
4. 2023년도 부패영향평가 현황



2023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Corruption Risk Assessment casebook 2023

01

부패영향평가 제도 개요



부패영향평가 의의

- 법령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될 경우 이를 사전에 정비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부패방지시스템

부패영향평가 목적

- 법령 등의 불확정 개념, 공백규정, 비현실적 기준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부패발생 가능성 차단
- 법제도에 있어서 부패발생에 취약한 분야의 본질적인 원인을 합리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반부패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기반 마련
- 법령 등의 입안·집행과정에서 재량기준의 적정화, 행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정책의 신뢰성·예측가능성 제고

부패영향평가 필요성

- 사안별로 사후 적발·처벌에 중점을 두는 소극적 부패통제로는 구조적 취약분야의 부패발생 방지에 한계
-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개선하는 부패 예방적 성격의 통제장치 필요

- ▶▶ 2005. 12. 29. 부패방지법 개정을 통하여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였고, 2006. 4. 1. 부터 본격 시행하게 되었으며,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2007. 12. 28. 부터 부패영향평가 제도 도입 · 운영

법적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 · 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및 부령
2.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 · 예규 · 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규칙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 ·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 지방공단 등의 내부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제32조

- 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 자료요청, 평가결과의 통보 등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장의 부패영향평가 요청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제6항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나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령안을 보내면서 함께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여성가족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통계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기간(「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하는 경우 그 입법예고기간을 포함한다)이 끝나기 전까지 그 결과를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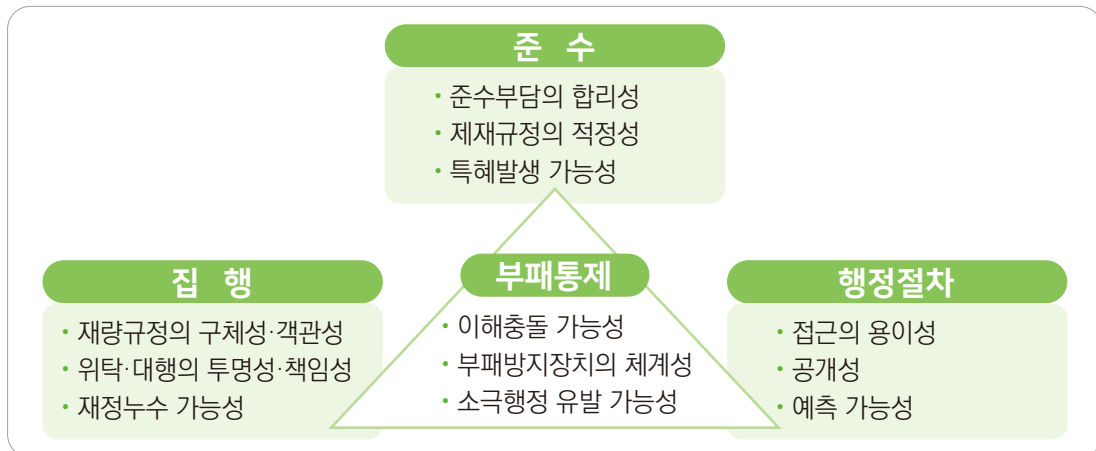
02

부패영향평가 기준(영 제30조제1항)



□ 평가 기준은 크게 ‘준수’, ‘집행’, ‘행정절차’, ‘부패통제’의 4가지 영역으로 분류

- ‘준수’는 행정의 수요자(민원인 등) 입장에서 부패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정들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준수부담의 합리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및 ‘특혜발생 가능성’으로 세분화됨
- ‘집행’은 해당규정이 행정의 공급자(처분권자 등) 입장에서 부패유발 요인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재정누수 가능성’으로 세분화됨
- ‘행정절차’는 해당 규정이 수요자나 공급자 입장이 아닌 행정절차적 요인으로 인해 부패발생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접근의 용이성’, ‘공개성’, ‘예측가능성’으로 세분화됨
- ‘부패통제’는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등 행정절차 전반에 걸쳐 사적인 이해관계 개입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부패통제장치 및 부패방지 법령 등이 마련되어야 하는지를 평가하며,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 침해,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해충돌가능성’,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으로 세분화됨



준수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준수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제재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집행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량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위탁·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 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행정절차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접 근 의 용 이 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익제기 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 수렴에 있어 이해 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공 개 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할 구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처리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통제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이 해 총 돌 가 능 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 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 패 방 지 장 치 의 체 계 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 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소 극 행 정 유 발 가능성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03

부패영향평가업무 처리절차



1. 부패영향평가 요청

1) 행정기관이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법령안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첨부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하는 즉시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 요청

※ 평가요청에서 제외되는 법령

⇒ 직제, 국호·국기·연호, 상훈·전례·국경일, 급여·수당, 문서·관인·차량관리 관련 법령

⇒ 평가요청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추후 국민권익위원회는 직권으로 평가 실시 가능

⇒ 참고 :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제3조의2

2) 평가요청 시 제출할 자료

구 분	제출할 자료	비 고
일 부 개 정 법 령	• 법령안 •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 조문별 개정이유서 • 법령 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요청 시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공청회 자료, 연구 용역 자료 등 추가 제출
제 정·전 부 개 정 법 령	• 법령안 •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법령 제·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요청 시 공청회 자료, 연구 용역 자료 등 추가 제출

- 행정기관의 법령입안 주무부서는 법령평가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쳐 제출
- 관계기관협의 및 입법예고 단계에서 이미 제출한 법령(안)이 수정·보완된 경우 즉시 그 내용 및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

2.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및 결과 통보

1) 평가기간

- 국민권익위원회는 소관기관이 제출한 법령안 및 평가자료를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단계부터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통상 40일 이내 평가 실시

- 입법예고기간 내에 평가를 종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가기간 연장 가능

※ 평가기간 연장사유 : 법령(안)의 지연제출, 제출자료의 보완, 관계기관과의 협의 지연, 법령(안)의 수정·변경 등으로 시간이 필요한 경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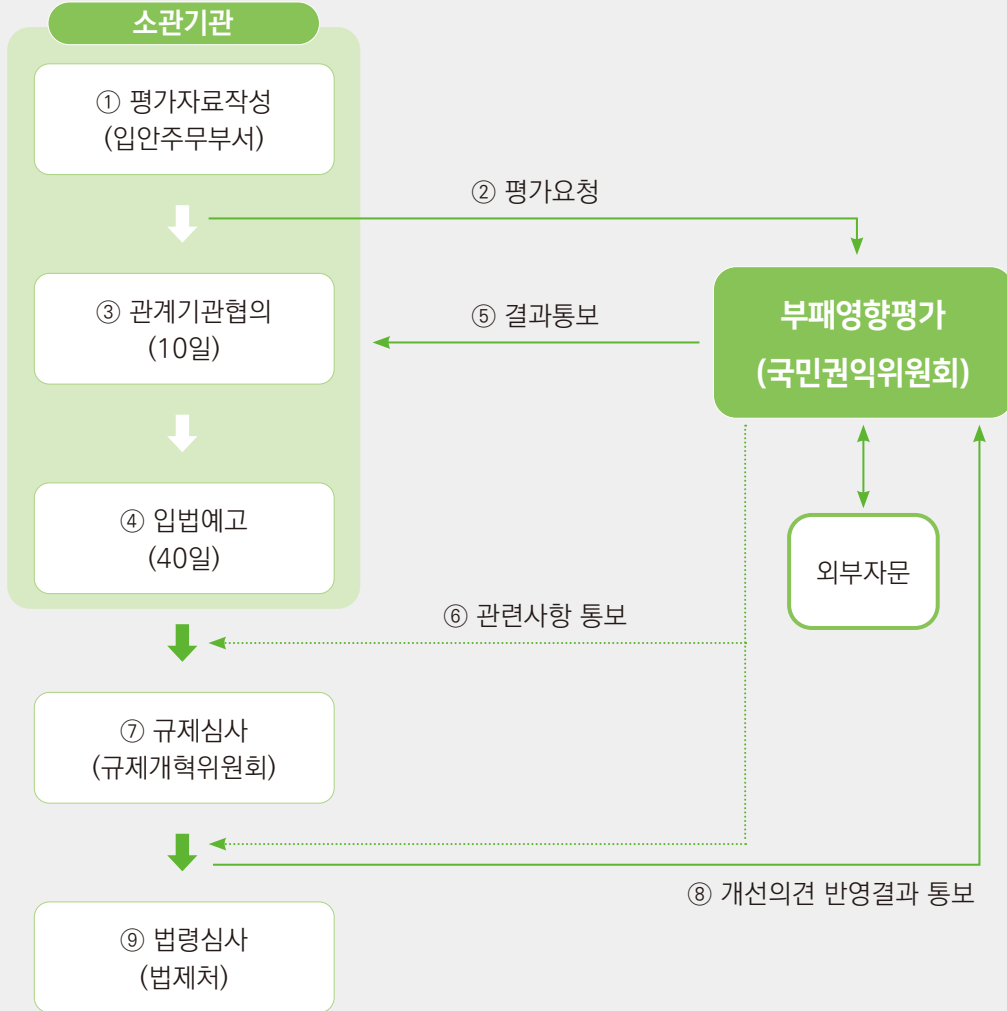
2) 평가방법

- 국민권익위원회는 소관기관이 제출한 법령안 및 평가자료를 토대로 평가 실시
 - 개정법령의 경우에는 개정되는 부분을 평가하면서 그 밖의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현행 규정도 함께 평가
- 평가단계에서 해당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필요시 관계기관·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 다수부처 관련사항,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또는 ‘외부전문가 풀(POOL)’에 등록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
- 국민권익위원회는 평가를 마친 경우 평가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소관기관에 통보
 - 평가결과는 원안동의·개선권고로 세분하여 통보
- 국민권익위원회는 평가결과가 개선권고나 철회의견인 경우로서 규제영향분석과 관계가 있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법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정비·개선에 참고가 되는 경우 법제처에 통보하여 각 업무에 활용토록 할 수 있음

3) 평가결과의 처리

- 행정기관은 부패영향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의견 반영 여부를 법제처 심사의뢰 시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
- 행정기관은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
 - 국민권익위원회는 재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기관에 통보
 - 소관기관의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
 -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
 - 소관기관과의 협의·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재평가 요청된 제·개정 법령(안)은 당해 법령(안)의 원평가자 이외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평가를 실시하게 하되,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침
- 국민권익위원회는 실태조사 및 이행점검 등을 통해 행정기관의 개선의견 처리상황 및 협조 이행상황을 확인
 - 법령(안) 제출시기, 평가자료 협조, 권고사항 이행, 자율평가체계 구축·운영 등
-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차관·국무회의 시 첨부되며,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선의견 반영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 시 관련 의견 제출

제·개정 법령안 부패영향평가 절차



※ 입안주무부서 : 제·개정 법령 관련 주관부서

04

23년도 부패영향평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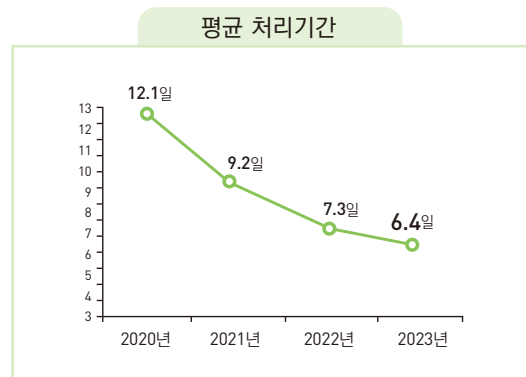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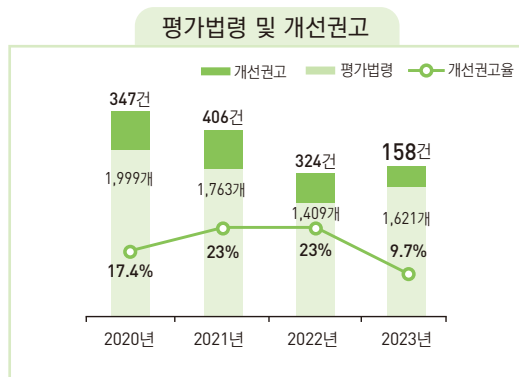
1. 추진개요 및 성과

■ (신속점검)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체계적 평가 신속 추진

- 1,621개의 제·개정 법령안을 평가하여 158건의 개선권고 실시

※ 행안부, 기재부 등 45개 중앙행정기관의 1,621개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완료하여 85개 법령에서 158건의 권고사항을 발굴(권고율 9.7%)

- 평가법령에 대한 평균 처리기간은 6.4일로 소요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



■ (개선권고) 법령에 대한 정밀 정비로 부패발생 근본요인 사전 차단

- (법령종류별) 개선법령은 대통령령(62.7%, 56건)이 가장 많고, 총리령·부령(23.7%, 22건), 법률(13.6%, 6건) 순임
- (법령분야별) 산업·개발(47.1%, 40건) 분야의 개선권고가 가장 두드러지며, 환경·보건(14.1%, 12건), 재정·경제(9.4%, 8건) 순으로 권고 추진
- (평가기준별)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에 따른 권고(38.0%, 60건)가 최다

□ (추진성과) 국정과제 · 민생과 밀접한 분야 부패유발제도 적극 개선

- 예방접종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기준을 접종 당시 재직증명이 가능한 서류로 명시하여 국민의 혼란 제거
- 부실징후기업 공동관리절차 관련 협의회의 통보 범위 구체화로 재량의 적정기준 마련
- 희귀질환 지정결과를 대국민에 공고하도록 하여 보건행정의 투명성 제고

2. 평가실적 세부현황

□ 접수현황

- '23년 한 해 동안 1,594개 제·개정법령안에 대한 평가가 접수되어, 최근 3년간의 감소추세와 달리 전년(1,449개) 대비 9.2% 증가

[제 · 개정법령 접수현황]

(단위 : 개, %)

구분	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행정규칙
전체누적 (’06.4.~’23.)	27,373(100)	4,566(16.2)	12,514(45.7)	10,152(37.1)	140(0.5)
’20년	1,965(100)	333(16.9)	904(46.0)	722(36.8)	6(0.3)
’21년	1,754(100)	134(7.6)	916(52.2)	704(40.2)	-
’22년	1,449(100)	134(9.3)	716(49.4)	597(41.2)	2(0.1)
’23년	1,594(100)	146(9.2)	837(52.5)	609(38.2)	2(0.1)

▣ 처리현황

- 1,621개('22년 이월 포함)의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완료하였는데 법률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849개, 52.4%)이 절반 이상 차지

[제·개정법령 처리현황]

(단위 : 개, %)

구분	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행정규칙
전체누적 (’06.4.~’23.)	27,334(100)	4,561(16.7)	12,502(45.7)	10,127(37.0)	144(0.5)
’20년	1,999(100)	336(16.8)	916(45.8)	740(37.0)	7(0.3)
’21년	1,763(100)	136(7.7)	920(52.2)	707(40.1)	-
’22년	1,409(100)	131(8.0)	701(50.3)	575(41.2)	2(0.1)
’23년	1,621(100)	143(8.8)	849(52.4)	627(38.7)	2(0.1)

- 평가에 소요된 평균 처리기간은 6.4일로 ’06년에 부패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가장 신속하게 평가
 - 처리건수가 전년 대비 15%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기간은 전년대비 0.9일 단축

[처리 기간]

(단위 : 개, 일)

구분	전체 평가법령		개선법령		원안법령	
	법령수	처리기간	법령수	처리기간	법령수	처리기간
전체누적 (’06.4.~’23.)	27,334	12.6	2,985	20.9	24,349	11.5
’20년	1,999	12.1	169	20.9	1,830	11.3
’21년	1,763	9.2	182	15.5	1,581	8.5
’22년	1,409	7.3	136	14.8	1,273	6.5
’23년	1,621	6.4	85	15.9	1,536	5.9

- 원안동의의 경우 5.9일로 신속하게 처리하여 빠른 제·개정을 지원
- 개선권고는 대상기관과의 사전협의* 강화 등으로 처리기간이 전년대비 1.1일 증가한 15.9일 소요

※ 이행관리 및 개선권고 기준 개선·정비에 따라 개선권고 전 대상기관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강화하여 합리적 권고안 도출

□ 권고현황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등 85개 제·개정법령에 대해 158건의 개선을 권고

[개선권고 현황]

(단위 : 개, %)

구분	전체누적 (’06.4.~’23)	’20년	’21년	’22년	’23년	증감 (전년대비)
평가법령	27,334	1,999	1,763	1,409	1,621	15.0 ↑
개선법령	2,985	169	182	136	85	37.5 ↓
개선권고	6,791	347	406	324	158	51.2 ↓
개선권고율	24.8	17.4	23.0	23.0	9.7	13 ↓

- 개선권고율은 9.7%로 전년 대비 큰폭으로 감소하였으나,
-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제·개정 등 법환경 변화 및 개선권고 기준 정비* 등의 영향으로 불필요한 권고를 최소화하고 개선권고의 품질·완성도를 제고

* (권고 기준 정비) 행정제재 가중처분 명확화에 대한 전부처 대상 제도 개선 추진(’21.1~) 및 고시·공고 필요 기준 마련 등 일괄적 권고 및 상위법 개정에 대한 권고 지양, 기관별 불이행 사유 전문가 자문·분석 등 권고 개선기준 지속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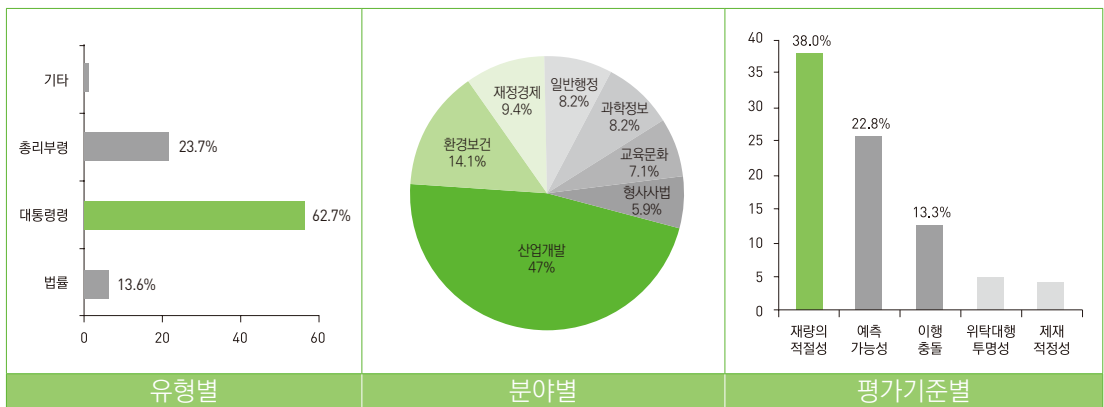
- 국정과제·민생 관련 주요 법령의 개선권고는 법령별 전담직원 지정 등 접수단계부터 집중관리하여 신속한 제·개정 적극 지원

※ 2023년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평균처리기간: 15.9일

[국정과제 관련 주요 법령 제·개정안 개선권고 현황]

법령명	국정과제	소관부처	소요기간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66.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질병관리청	1일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42.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복지부	7일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6. 필수의료 기반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복지부	10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교육부	10일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2.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중기부	10일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 체계 확립	문체부	10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복지부	11일
청년기본법 시행령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국조실	13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87.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환경부	14일

□ 개선법령 세부현황



① 법령 유형별

- 전체 개선법령 중 대통령령이 62.7%(56개)로 법률 위임사항이나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대통령령이 가장 큰 비율 차지

[유형별 개선법령]

(단위 : 개, %)

구 분	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기타
전체누적 (’06.4.~’23.)	2,985(100)	697(25.9)	1,503(47.9)	753(25.1)	31(21.8)
’20년	169(100)	23(13.6)	106(62.7)	40(23.7)	-
’21년	182(100)	18(9.9)	116(63.7)	48(26.4)	-
’22년	136(100)	5(10.6)	95(66.4)	35(21.2)	1(0.7)
’23년	85(100)	6(13.6)	56(62.7)	22(23.7)	1(0.2)

② 법령 분야별

- 분야별로는 산업·개발 분야가 47.1%(40개)로 절반을 차지했고, 환경·보건 14.1%(12개), 재정·경제 9.4%(8개) 순으로 개선권고
 - 기업·혁신, 교통·건설 등 신산업분야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등과 관련된 법령의 개선이 많았음
- 산업·개발 분야의 경우 국토부(11개), 해수부(9개), 농림부·농촌진흥청(7개), 중기부(5개) 등의 소관 법령으로
 - 신산업·신기술 혁신의 지원이나 규제완화를 위한 제·개정법안의 개선이 두드러짐

[산업 · 개발] 주요 사례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구성 · 운영에 이해충돌방지장치를 강화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규제완화를 위한 튜닝검사 기간 연장에 대한 상한을 명시하고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 등의 공고장소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공개성 · 예측가능성 제고

☑ 「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안

건설기준 등을 완화할 수 있는 철도범위나 기준 구체화로 과도재량 차단 및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 환경 · 보건 분야의 경우 복지부(4개), 환경부(3개), 질병관리청(3개) 등의 소관 법령으로
 - 국민생활과 밀접한 감염병 ·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안의 개선이 많았음

[환경 · 보건] 주요 사례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희귀질환 지정 결과(현황) 등에 대해 신청자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에게 공개하도록 명시하여 보건행정의 공개성 제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예방접종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기준을 접종 당시 재직증명이 가능한 서류로 명시하여 국민의 혼란 제거

[분야별 개선법령]

(단위 : 개, %)

구분		계	일반 행정	교육 문화	국방 보훈	재정 경제	산업 개발	과학 정보	환경 보건	형사 사법	기 타
누적 (’06.4.~ '23.)	평가 법령	23,926	4,447	2,636	1,554	2,555	6,539	917	4,270	916	92
		(100)	(18.6)	(11.0)	(6.5)	(10.7)	(27.3)	(3.8)	(17.8)	(3.8)	(0.4)
	개선 법령	2,680	385	337	138	197	827	144	579	66	7
		(100)	(14.4)	(12.6)	(5.1)	(7.4)	(30.9)	(5.4)	(21.6)	(2.5)	(0.3)
'20년	평가 법령	1,999	324	177	127	208	663	63	322	114	1
		(100.0)	(16.2)	(8.9)	(6.4)	(10.4)	(33.2)	(3.2)	(16.1)	(5.7)	(0.1)
	개선 법령	169	34	17	14	11	53	4	24	12	0
		(100.0)	(20.1)	(10.1)	(8.3)	(6.5)	(31.4)	(2.4)	(14.2)	(7.1)	(0.0)
'21년	평가 법령	1,763	298	171	146	148	552	38	332	78	-
		(100)	(16.9)	(9.7)	(8.3)	(8.4)	(31.3)	(2.2)	(18.8)	(4.4)	-
	개선 법령	182	38	22	11	15	39	2	54	1	-
		(100)	(20.9)	(12.1)	(6.0)	(8.2)	(21.4)	(1.1)	(29.7)	(0.5)	-
'22년	평가 법령	1,409	238	122	88	155	429	57	245	75	-
		(100)	(16.9)	(8.7)	(6.2)	(11.0)	(30.5)	(4.0)	(17.4)	(5.3)	-
	개선 법령	136	27	21	5	19	31	14	14	5	-
		(100)	(19.9)	(15.4)	(3.7)	(13.9)	(22.8)	(10.3)	(10.3)	(3.7)	-
'23년	평가 법령	1,621	303	115	135	184	510	42	261	71	-
		(100)	(18.7)	(7.1)	(8.3)	(11.4)	(31.5)	(2.6)	(16.1)	(4.4)	-
	개선 법령	85	7	6	-	8	40	7	12	5	-
		(100)	(8.2)	(7.1)	-	(9.4)	(47.1)	(8.2)	(14.1)	(5.9)	-

□ 기관별 현황

- (평가의뢰) 제·개정법령 부패영향평가 의뢰 상위부처는 국토교통부(12.6%, 201개)였고, 다음으로 기획재정부(7.5%, 120개), 행정안전부(6.5%, 103개) 순으로 나타났다
- (개선법령) 국토교통부가 11개로 개선법령 수가 가장 많았고, 해양수산부(9개), 농림축산식품부(5개)가 그 뒤를 차지

[기관별 현황]

(단위 : 개, %)

구분	의뢰 법령	평가법령			
		계	개선법령	개선권고	원안법령
계	1,595	1,621(100.0)	85(5.2)	158	1,536(94.8)
1. 국토교통부	201	205(100.0)	11(5.4)	28	194(94.6)
2. 기획재정부	120	120(100.0)	3(2.5)	3	117(97.5)
3. 행정안전부	103	103(100.0)	3(2.9)	7	100(97.1)
4. 해양수산부	103	104(100.0)	9(8.7)	14	95(91.3)
5. 보건복지부	94	93(100.0)	4(4.3)	8	89(95.7)
6. 환경부	91	92(100.0)	3(3.3)	6	89(96.7)
7. 고용노동부	74	67(100.0)	1(1.5)	1	66(98.5)
8. 국기보훈부	73	87(100.0)	-	-	87(100.0)
9. 농림축산식품부	62	62(100.0)	5(8.1)	8	57(91.9)
10. 산업통상자원부	52	56(100.0)	3(5.4)	6	53(94.6)
기 타 (문화체육관광부 등 35개 기관)	622	632(100.0)	45(8.4)	136	536(91.6)

□ 평가기준별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기준에 따른 권고가 38.0%(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측가능성 22.8%(36건), 이해충돌가능성 13.3%(21건) 순

[평가기준별 현황]

(단위 : 건, %)

분야	평가기준	'20년	'21년	'22년	'23년
계		347(100)	406(100)	324(100)	158(100)
준수	① 준수부담의 합리성	-	3(0.7)	2(0.6)	4(2.7)
	② 제재규정의 적정성	18(5.2)	34(8.4)	16(5.0)	7(4.7)
	③ 특혜발생 가능성	2(0.6)	2(0.5)	4(1.2)	6(4.0)
집행	④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73(21.0)	78(19.2)	140(43.2)	60(38.0)
	⑤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14(4.0)	21(5.2)	11(3.4)	9(5.7)
	⑥ 재정누수 가능성	-	2(0.5)	3(0.9)	1(0.6)
행정 절차	⑦ 접근의 용이성	21(6.1)	21(5.2)	3(0.9)	2(1.3)
	⑧ 공개성	23(6.6)	24(5.9)	17(5.3)	8(5.1)
	⑨ 예측가능성	89(25.6)	82(20.2)	63(19.5)	36(22.8)
부패 통제	⑩ 이해충돌가능성	102(29.4)	127(31.3)	55(17.0)	21(13.3)
	⑪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5(1.4)	6(1.5)	5(1.5)	4(2.5)
	⑫ 소극행정유발 가능성	-	6(1.5)	5(1.5)	-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은 과태료·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 침익적 처분 기준의 구체화, 지정·인증·판단 등과 관련한 재량의 기준이나 범위의 명확화 등을 주로 권고

참고 사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오염물질 저장시설 운영과 관련한 행정처분(영업정지)의 감경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행정청 자의적 해석·판단 방지

- 예측가능성은 위임규정의 구체성이나 공개방식 등을 명확하게 하여 공공·행정 정보의 접근성 제고 등에 관한 개선

참고 사례

「농업과학기술정보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지방농촌진흥기관 대상의 평가방법, 평가항목, 평가절차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고시 또는 훈령·예규 등으로 구체화하여 평가의 투명성·예측가능성 제고

- 이해충돌가능성은 각종 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으로 전년(20%) 대비 권고비중이 6.7%p 감소
 - 지속적 권고로 법·제도 내 위원회 구성·운영의 이해충돌방지근거 안착 및 국민의 권리·의무와의 관련성이 크고 심의·의결여부를 고려하여 권고하도록 판단기준을 정비하여 개선권고가 감소

참고 사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구성(내·외부 위원비율) 및 위원의 자격기준 명시 및 제척·기피·회피의 규정마련 등 이해충돌방지장치 강화

3. 개선권고 주요 사례

□ 재량남용 방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교육부

- 사무국장을 교수로 대체하여 예외적으로 임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무엇인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일부 예시를 열거하여 인사권의 재량 남용 소지 차단

□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행정안전부

- 안전교육관리시스템 운영 등의 위탁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사무에 대한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여 위탁행정의 투명성 강화

□ 위원회 이해충돌방지 강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토교통부

-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대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및 해촉 요건 등의 보완으로 위원회 운영 및 결정에 공정성 확보

□ 행정의 예측 가능성 제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질병관리청

- 예방접종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중 재직증명의 기준을 “근로자가 접종한 다음날 재직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명확히 하여 지원금 신청의 혼란 방지

□ 행정의 공개성 제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농촌진흥청

- 기술보급확산지원단 사업의 실행계획 등 세부 사항을 훈령·예규·고시 등으로 위임하는 등의 행정규칙으로 마련하여 행정정보의 접근성 확대

□ 소극행정 유발가능성 차단

「특정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법무부

- 일부 불기소 처분의 경우 신상정보 공개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이나 범위를 명시하여 소극적 업무처리를 방지

PART

II

제·개정 법령 평가 사례

1. 평가기준별 사례

- 1) 준수
- 2) 집행
- 3) 행정절차
- 4) 부패통제



01

평가기준별 사례



준수

(1) 준수부담의 합리성

개요

- 법령 등의 적용 대상 집단이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각종 비용 또는 희생 등이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인 수준인가를 판단
- 준수부담이 과도할 경우 법령 등의 적용 대상자가 뇌물제공 등의 부패행위를 통해 그 부담을 면제 혹은 완화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부패유발요인 평가

평가내용

- 준수부담의 법적근거 등 검토
 - 다수의 부담·희생 등을 수반하는 근거, 요건, 대상 및 범위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적용 대상 및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에 있는지를 검토
 - 현금지출, 현물 및 서비스 제공과 같은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법률상 작위·부작위 의무, 사실상의 희생, 기회비용 등까지 검토

● 준수부담의 필요성(불가피성) 검토

- 준수부담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 또는 준수부담의 도입근거·배경 등을 검토 후,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준수부담의 부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검토

● 준수부담의 합리화 방안 등 검토

- 준수부담의 범위와 정도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수준인지를 검토
- 당해 부담이외에 이를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결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지 검토

평가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각종 부담·희생 등을 수반하는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적용 대상 및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에 있는가?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준수부담의 부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 준수부담의 범위와 정도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수준인가?	
☐ 일부에 국한된 문제해결을 위해 다수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상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 벌금 등 이중부과로 인한 중복부담은 없는가?	
☐ 준수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결할 수는 없는가?	

사례 0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13조(순환자원의 인정 수수료)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평가기준

- 준수부담의 합리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현 황

- 평가 대상 조문은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의 납부 방식을 규정하고 있음
 - 순환자원 인정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해야하나, 환경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음

■ 문제점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은 “국가에 납부할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수입인지로 납부할 것을 의무화하되, 환경부장관이 기타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구분한 기준이 모호하고 불분명함
 - 수입인지 납부 의무로 신청인에게 불필요한 절차 및 비용을 부담하게 할 여지가 있음

검토결과: 개선권고

- 수입인지 납부 의무를 삭제하고, 수수료 납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열함

개선권고 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4004호, 2023. 12. 19., 전부개정]

제13조(순환자원의 인정 수수료) ①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2) 제재규정의 적정성

개요

- 제재수준이 과도하게 높아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처벌을 회피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거나, 지나치게 미약하여 다소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위반행위를 범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하는지 검토
-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성을 유지함으로써 규정이 실효성을 갖는가를 판단하고 제재의 정도가 부패방지에 충분하지 않아 위반행위를 범할 유인이 존재하는지 등을 평가

평가내용

- 제재규정 검토
 - 제·개정되는 부분 또는 평가대상 법령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근거규정(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및 관련 규정·내용을 검토
- 제재규정의 필요성 검토
 - 제재규정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내용, 발생원인 및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 검토
 - 위반행위의 사회적 피해규모 및 문제의 심각성 검토
 -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 또는 피해규모가 다른 방법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

- 다른 법령의 유사 사례와 비교 · 검토
 - 다른 법령에서 당해 위반행위와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제재내용 및 정도, 근거규정 조사
 - 다른 법령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평가대상 법령의 제재수준이 어떠한지 검토
- 제재수준의 적정성 검토
 -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 경중 · 횡수 · 정도 검토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유형 · 정도 검토
 - 제재수준이 위반행위를 통제하는 데 적정한지 검토

평가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유사 법령 및 제재대상 행위의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제재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 또는 피해규모가 다른 방법(예 : 민사 또는 사적 자치)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 다른 법령의 유사한 사례,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과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강하거나 약한 경우 그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가?	
☐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법령 위반 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준인가?	
☐ 제재수준이 미약한 경우 부패행위 억제 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가?	
☐ 제재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한 제재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부패 등 위반행위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당해 제재내용 이외에 다른 효과적인 제재 방법은 없는가?	

사례 이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별표 1]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 취소 등 기준 (제31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시	2차 위반 시	3차 위반 시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42조의3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	-
나.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 하게 된 경우	법 제42조의3 제1항제2호	개선 권고	개선 권고	지정 취소
다. 부도, 폐업,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 되는 경우	법 제42조의3 제1항제3호	지정 취소	-	-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 예측가능성

■ 현 황

- 개정령안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법률 제19412호, 2023. 5. 16. 일부개정, 2023. 11. 17. 시행) 이 개정됨에 따라 법 제42조의3제2항에서 지능형 로봇전문기업 지정의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2조의2(지능형로봇로봇전문기업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로봇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능형 로봇의 부품 및 완제품, 관련 시스템의 개발·제조와 로봇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지능형로봇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총매출액 중 지능형 로봇의 부품 및 완제품, 관련 시스템의 개발·제조와 로봇서비스의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¹⁾에 해당하는 기업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② 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원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3(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의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2조의2에 따라 지정한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의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동 시행령 제29조(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기준) ① 법 제4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연간 총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일 것
2. 로봇산업(「통계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분류에 따른 로봇 산업을 말한다)에 속하는 부품·완제품, 관련 시스템 및 로봇서비스의 연간 매출액이 연간 총 매출액의 50퍼센트 이상일 것
- ②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준용한다.

문제점

- 개정령안 [별표 1] 2.개별기준 나.목을 위반 시 “개선 권고” 라는 처분을 하고자 하나,
 - 동 개정령안의 “개선 권고”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3호²⁾에 따라, 행정처분이 아닌 행정지도적 성격을 띠고 있음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개정령안 [별표 1] 2.개별기준 나. 목을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을 개선권고에서 시정 조치로 변경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行政作用)을 말한다.
3.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3. 11. 17.] [대통령령 제33871호, 2023. 11. 16., 일부개정]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 취소의 기준 (제31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42조의3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능형 로봇전문기업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않게 된 경우	법 제42조의3 제1항제2호	시정 조치	시정 조치	지정 취소
다.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42조의3 제1항제3호	지정 취소		

사례 02 청년기본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21조의6(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국무총리는 법 제24조의5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국무총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를 법 제24조의5제3항에 따른 전담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년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2.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산 분야의 전문인력을 2명 이상 포함한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3.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보안에 필요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확보할 것

4.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절차 및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처리 기준을 갖추어 있을 것

③ 국무총리는 전담 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의 전담 운영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현저히 부실하게 수행하여 국무총리가 전담 운영기관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 ⑤ (생략)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현황

- 개정안은 「청년기본법」 개정(법률 제19253호, 2023. 3. 21. 공포, 2023. 9. 22. 시행)으로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처리·연계·공유 등을 위한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률에서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과 전담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위임

■ 문제점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통합정보시스템 전담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이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당연 지정취소 사유로 규정하여야 하나, 임의적 취소사유로 규정,
 -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지정취소에 대한 재량권을 인정하여, 유사법령 대비 제재규정이 미약하고, 지정취소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존재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당연 지정취소 사유로 규정하여 제재규정의 적정성 확보

■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청년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 9. 22.] [대통령령 제33720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21조의6(지정취소 기준) 법 제24조의4제4항에 따른 지역센터 또는 중앙센터의 지정 취소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청년기본법 시행령 [별표]

지역센터 또는 중앙센터의 지정 취소 기준 (제21조의6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개별기준에 따른 경고를 할 때에 처분권자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개선할 것을 알렸으나 그 위반 상태가 개선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반복하여 위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처분권자는 제2호나목 및 다목의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이 지정 취소인 때에는 이를 경고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4조의4 제4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의4 제4항제2호	경고	지정 취소
다. 법 제24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24조의4 제4항제3호	경고	지정 취소

사례 0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별표 6]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제6조의8제5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 다. (생 략)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 취소인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고, 납품대금 연동 확산 사업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조의7 제4항제1호	지정취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조의7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조의7 제4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다. 법 제3조의7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법 제3조의7 제4항제2호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현황

- 개정령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된 연동지원본부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법 제3조의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7(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 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동지원본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제점

- 법 제3조의7에 따라 연동 확산 지원 본부로 지정받은 기관의 위반행위가 ‘지정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를 업무정지로 감경할 수 있게 하여 과도한 재량권 남용 가능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법 제3조의7 제4항에서 지정을 취소해야하는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시행령에서 처분을 감경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상위법과 상충·모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집행 담당자의 오인 가능성이 있음

검토결과 : 개선권고

-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연취소 사유에 대하여 감경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하도급법 시행령)

[시행 2023. 10. 4.] [대통령령 제33770호, 2023. 9. 26., 일부개정]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제6조의7제6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처분(제2호가목에 따른 처분은 제외한다)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 취소인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업무 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고,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사업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생략)

(3) 특혜발생 가능성

개요

- 법령 등으로 인해 특정인 또는 단체에게 특혜가 발생하는 경우, 발생한 특혜를 획득·유지·확대하는 과정에서 뇌물제공 등 부패행위가 발생되거나 용인될 위험성이 있는지 평가

평가내용

- 수익적 규정 검토
 - 법령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혜택이나 반사적 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 또는 잠재적으로 혜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 및 그에 근거한 처분내용을 검토
 - 구체적인 수익 내용이 하위법규에 위임된 경우 하위법규의 관련 조항 검토
 - 수익을 부여하는 요건·대상·절차·목적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특정 계층 등에 대한 수익 발생 가능성
 - 혜택이나 이익의 수혜대상이 여타 다른 법령과 비교·검토 시 특정 계층이나 기업·단체 등에 한정되는지 검토
- 특혜 발생 방지를 위한 유사 사례와의 적정성·형평성 검토
 - 혜택이나 이익 등의 부여 내용·정도가 타 법령 등의 유사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한 것은 아닌지 검토
- 특혜 발생 방지를 위한 부패 통제장치 마련 여부 검토
 -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등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는 특혜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평가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법령 등이나 그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누군가에게 어떤 혜택이나 이익(법률상·사실상의 이익 포함)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 수익을 부여하는 요건·대상·절차·목적 등이 명확하고 공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혜택이나 이익 수혜대상이 여타 다른 법령과 비교·검토시 특정 계층이나 기업·단체 등에 한정되어 있는가?	
☐ 혜택이나 이익 등의 부여 내용·정도가 타 법령 등의 유사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한 것은 아닌가?	
☐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는 특혜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은가?	

사례 이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3

[별표 4]

사유별 사업비 환수기준 (제25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참여제한 기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1호	사업비 전액
2. <u>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u>	<u>법 제31조 제1항제2호</u>	<u>사업비 전액. 다만, 제25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u>
3.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3호	사업비 전액 이내
4. 자료 및 사업결과물을 거짓으로 또는 표절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4호	사업비 전액
5. 그 밖에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6호 및 이 영 제24조제1항	
가. 사업의 수행과정 및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제24조제1항 제1호	사업비 전액
나. <u>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관련 자료 제출·보고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u>	제24조제1항 제2호	사업비 전액 이내

■ 평가기준 : 특혜발생 가능성,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 현 황

- 동 시행령 제정령안은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하여 표준을 개발 및 보급하고 확산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고, 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음
- [별표4]에는 지원사업 수행시 위반행위별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는 등 사업비를 환수하는 규정을 담고 있음

■ 문제점

-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하여 표준을 개발 및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등에 지원된 사업비 환수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
 - 위반행위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원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에 “사업비를 감면할 수 있다” 라고만 규정하고, 제2호에 대해서만 “제25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고 하여 구체적인 한도 설정이 없어 사업비 환수 및 감면 범위가 불분명함
 - 이와 같이 규정할 경우, 행정청이 재량에 의한 자의적 결정이 가능하여 특정기관이나 단체에게 특혜 발생 가능성이 있고 처분을 면제받기 위한 위반자의 부정청탁 등이 발생 될 우려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지나치게 포괄적인 사업비 환수범위를 구체적으로 한도 설정

■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7. 4.] [대통령령 제33602호, 2023. 6. 27., 제정]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환수 사유별 사업비나 지원금의 환수기준 (제25조제2항 관련)

환수 사유	근거 법조문	환수 금액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1호	사업비나 지원금 전액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2호	사업비나 <u>지원금</u> 전액
3.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3호	다른 용도로 사용된 지원금 전액
4. 자료 및 사업결과물을 거짓으로 또는 표절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4호	사업비나 지원금 전액
5. 그 밖에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사업의 수행 과정 및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 제6호 및 이 영 제24조제1항	사업비나 지원금 전액

사례 02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이내
신청인	기관명 · 단체명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기관 · 단체 요건	()	다음에서 신청인이 해당하는 기관 등의 번호를 괄호 안에 적습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빌리티 혁신의 효율적 지원에 필요한 인력·기술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내부운영규정 2.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센터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3. 인력배치계획서 및 자금조달·집행계획서 4. 모빌리티 관련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전문인력 협력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이내
------	-----	------	--------

신청인	기관명 · 단체명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기관 · 단체 요건	()	다음에서 신청인이 해당하는 기관 등의 번호를 괄호 안에 적습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모빌리티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학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모빌리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5. 그 밖에 모빌리티 관련 교육훈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협력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학칙,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내부운영규정 2. 모빌리티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국내의 교육훈련 또는 모빌리티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지정서 발급
--------	---	-----	---	-----	---	-----	---	--------

신청인

처 리 기 관 :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시·군·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평가기준

- 특혜발생 가능성

■ 현 황

- 모빌리티 규제를 혁신하고, 모빌리티 혁신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23. 10. 19. 시행)
 - 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방법, 전문인력 협력기관 지정 기준·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규정

■ 문제점

-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특정 기관에 특혜를 부여할 수 있는 소지 있음
 - 제8조제1호부터 제4호에서는 타법에 따라 정해진 기관*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제5호**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재량에 의해 모든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어 임의적·자의적 지정 우려 있음
- * 학교(고등교육법),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법), 비영리법인(민법), 정부출연연구기관(정부출연기관법)
- ** 그 밖에 모빌리티 관련 교육훈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지정을 신청하는 기관은 학칙, 정관 등 내부운영규정과 관련 사업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계획서로는 해당 기관이 전문인력의 양성에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 * 시행규칙 제정안에서 국토교통부는 ‘전문인력 협력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하는 기관의 전문성과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규정

검토결과 : 개선권고

- ① (별지 제1호 서식) 국토교통부가 모빌리티지원센터를 임의적·자의적으로 지정하지 않도록 지정신청서의 기관·단체 요건에서 제5호*를 삭제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빌리티 혁신의 효율적 지원에 필요한 인력·기술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② (별지 제11호 서식) 전문인력 협력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기관의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정신청서의 첨부서류에 인력 보유현황, 모빌리티 관련 교육 또는 사업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개선권고 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10. 19.] [국토교통부령 제1263호, 2023. 10. 19., 제정]

[별지 제1호 서식]

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이내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기관·단체 요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모빌리티 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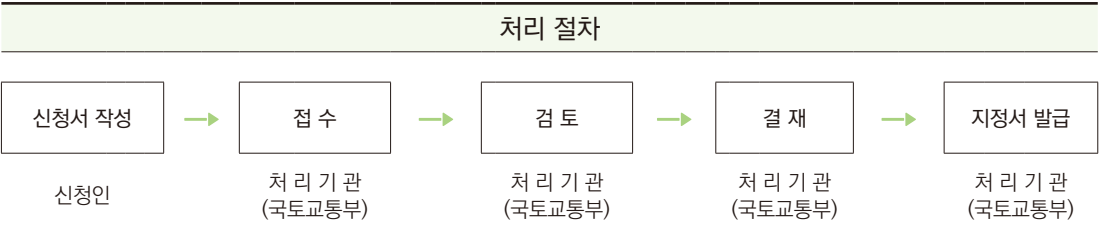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센터 업무에 관한 운영계획서(인력배치계획 및 자금조달·집행계획을 포함합니다) 2. 모빌리티 관련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1호 서식]

전문인력 협력기관 지정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이내
신청인	기관명 · 단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기관 · 단체 요건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모빌리티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학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모빌리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그 밖에 모빌리티 관련 교육훈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협력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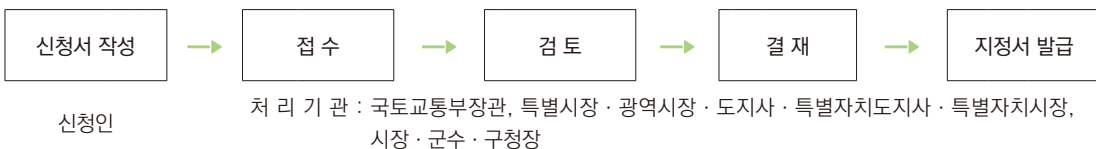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모빌리티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또는 모빌리티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2. 교육시설 · 장비 현황 3. 전문 교수요원 등 인력보유 현황	수수료 없 음
------	--	------------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집행

(1)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개요

- 행정의 전문화·다양화에 따라 행정청에 대한 재량권 부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추상적·다의적 법령은 집행과정에서 재량이 자의적으로 행사되거나 남용되는 등 부패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
- 재량권자,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재량범위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평가

평가방법

- 재량권자의 명확성 검토
 - 재량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당해 법령 또는 하위규정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재량판단의 기준·재량행사절차의 구체성 검토
 -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행사절차 등이 법령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법령 수준에서 규정되어야 할 주요 재량기준 또는 행사절차가 훈령·예규·고시·지침 등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검토
 - 법령 등의 적용 대상 집단·이해관계자는 행정실무자가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재량기준(업무처리기준)을 이해하고 있는지 검토

- 구체적 재량기준 또는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세부기준 없이도 직접 적용 가능한지 검토
- 법률이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나 고려사항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에 위임하는 경우 그 위임이 포괄적이지 않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위임인지 검토

● 재량범위의 적정성 검토

- 재량으로 선택 가능한 행위나, 효과의 종류(불확정개념의 해석·적용, 인·허가 여부, 취소·정지 여부 등), 기간의 장·단(취소·정지 기간 등), 금액의 상한·하한(과태료·과징금의 가중·경감) 등이 적정한지 검토
- 다른 법령에서 유사한 상황에 대해 인정되는 재량의 범위 등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지 검토
- 법적 근거 없이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
- 법령에 의하여 하위법령이나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여야 할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 검토

- 불명확한 재량규정으로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
- 검토 결과 재량이 불명확하게 규정된 경우 수범자가 재량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는지, 행정기관의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있는지 검토

● 과도한 재량권행사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 검토

- 재량권 행사과정에 당사자 등의 참여를 보장하는 장치(사전통지절차, 의견청취절차 등)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재량권 행사와 관련된 정보(회의록, 공문 등)가 공개되어 있는지 검토
- 재량권 행사 기준이 설정·공표 되어있는지 검토

평가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재량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당해 법령 또는 하위규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 행사절차 등이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법령 수준에서 규정되어야 할 주요 재량기준 또는 행사절차들이 훈령·예규·고시·지침 등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법령 등의 적용대상집단·이해관계자는 행정실무자가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재량 기준(업무처리기준)을 이해하고 있는가?	
☐ 구체적 재량기준 또는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세부 기준 없이도 직접 적용 가능한가?	
☐ 법률이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나 고려사항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에 위임하는 경우 그 위임은 포괄적이지 않고 구체적·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재량권의 행사범위가 타 법령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는 않은가?	
☐ 법적 근거 없이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않은가?	
☐ 법령에 의하여 하위법령이나 행정규칙으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여야 할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가?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은 없는가?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치가 있는가?	
☐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사례 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1

제6조(불기소처분 통보 등) ① 신상정보 공개 결정된 특정중대범죄사건에 대해 검사가 일부 또는 전부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사건 불기소처분 통보서로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신상정보 공개 결정한 특정중대범죄사건 전부가 불기소처분된 경우에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미 신상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신상정보 공개 결정한 특정중대범죄사건 일부가 불기소처분된 경우에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공개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 현 황

- 제정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은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한 특정중대범죄사건이 불기소 처분된 경우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이미 공개된 게시물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 전부 불기소 처분의 경우에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하고 기 공개한 게시물은 삭제하여야 하며
 - 일부 불기소 처분의 경우에는 정보의 공개나 게시물의 삭제 여부를 사법경찰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참 고

[특정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공개 관련 법령]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혐의에 대한 충분한 증거’ 등이 확인되는 경우 피의자의 얼굴·이름·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음
- * 특정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제정('23.10)됨에 따라 관련 조항은 삭제 예정

[신상공개심의위원회]

- 경찰의 「강력범죄 피의자 얼굴 및 신상공개 지침」(비공개 내부지침)에 따라 경찰청 소속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피의자의 신상공개 여부에 대한 심의 실시(위원회 설치의 재량 사항이며, 비상시·자문위원회 성격)

문제점

- 일부 불기소 처분의 경우 신상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사법경찰관에게 과도한 재량 부여
 - 신상정보공개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특정중대범죄사건이 대부분으로 피의자의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 일부 불기소 처분의 경우 공개여부에 대한 최소한의 범위나 기준이 없이 사법경찰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 과도한 재량행사 소지가 있고, 비공개 결정을 받기 위한 부정청탁 등 부패 발생이 우려
 - 이미 공개된 경우 제정령 제5조(신상정보공개 30일 후 게시물 삭제)를 고려할 때 불기소에 따른 공개정보 삭제결정을 신상정보공개 30일 이후까지 미루는 등 소극행정을 유발할 가능성 존재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일부 불기소 처분의 경우 공개여부를 판단하는 재량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범위를 명확히 규정
 - 신상정보공개의 공개 이후의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고(기 공개한 경우 즉시 삭제) 일부 불기소 처분의 경우 예외적으로 신상정보 공개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이나 범위를 규정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 25.] [대통령령 제34158호, 2024. 1. 23., 제정]

제6조(불기소처분 통보 등) ① 검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된 특정중대범죄사건 중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특정중대범죄사건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사건 불기소처분 통보서로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된 특정중대범죄사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된 경우에는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이미 신상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그 신상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 다만, 일부 불기소처분의 경우 불기소처분이 된 부분을 제외 하더라도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유지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삭제하지 않을 수 있다.

사례 02 공무원 재해보상법

평가대상 조문

제57조의2(역학조사)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질병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 등의 질환과 근무환경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요구할 때 역학조사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연금취급기관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후단에 따라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역학조사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후단에 따라 역학조사에 참석하는 사람은 역학조사 참석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 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른 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 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진단 결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진단 결과,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정보, 「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역학조사의 방법·대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6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2. (현행과 같음)

3. 제5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제5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역학조사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③ (현행과 같음)

■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 현 황

- 동 개정령안은 평가대상조문 제57조의2, 제63조에 각각 인사혁신처장에게 공무원 등의 질환과 근무환경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 권한과,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임
 - 특히, 제63조는 제2항에 제3호와 제4호를 각각 “제5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와 “제5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역학조사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로 규정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설·부과하고자 하는데,
 - 이와 관련하여 제63조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대상은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연금취급기관장 및 관계 공무원 등(제3호)”과,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제4호)” 누구든지 대상이 됨
 - 한편, 인사혁신처가 제57조의2제1항*를 통해 실시하고자 역학조사는 “공무상 질병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무원 등의 질환과 근무환경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것이고, 역학조사에 “공무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참석을 요구하면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해당 역학조사에 참석하게 할 수 있음
- * 제57조의2제1항 “인사혁신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 등의 질환과 근무환경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요구할 때 역학조사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문제점

- 신설되는 과태료의 대상이 구체적이지 않고* 역학조사에 참석을 요구한 자를 참석토록 승인하는 절차가 없어, 부과 과정에 인사혁신처장(제63조제3항)의 재량이 과도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행정질서벌로써의 제재실효성이 낮아질 우려

* 제5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제57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역학조사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 제63조제2항을 통해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있는 자는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연금취급기관장 및 관계 공무원 등(제3호)”와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제4호)” 누구에게든 부과될 수 있음
- 동 개정령안은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에 따른 역학 조사와 및 관련 과태료 조항을 참고한 입법안으로 보이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3항제3호에서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자¹⁾에게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수 없도록 1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통해 역학조사에의 협조를 강제하고 있는 이유는 동법이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 유지·증진 의무와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에 따른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제5조)하고 있고 근로자대표 역시 그 과정에 일부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동법으로 부과된 구체적인 작업환경 안전 의무규정을 위반한 사업주를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역학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환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요구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역학조사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후단에 따라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역학조사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그러나,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경우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는 것이 입법의 취지이므로, 연금취급기관장(급여를 청구한 해당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장²⁾에게 공무상 질병과 그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건강 증진과 관련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과 같이 공무상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여된 의무도 없고 당연히 제재도 확인되지 않는데, 이런 사정으로 볼 때, 소속기관장과 관계 공무원 등이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음
- 또한, 제57조의2제1항 “~이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는 때 역학조사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할 때의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범위도 지나치게 넓어 “해당 공무원의 공무상 급여청구와 관련된 불특정 이해관계인 전부와 관련 근무기간에 걸쳐 거쳐간 공무원/일반국민 할것 없이 누구든지”로 예상되므로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제1항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 해당 질병에 요양급여 및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과 같이 가능한 구체적으로 정하고, 역학조사에의 참석을 요구한 자를 어떤 방법(절차)으로 참석하게 할 것인지도 동법 혹은 하위법령에서 분명히 규정하여 행정청의 재량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관련된 자들의 행정 예측가능성도 높일 필요가 있음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① 제57조의2제1항 후단에서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예상가능한 수준에서 범위를 구체화하고,
- ② 당해 법률이나 하위 법령으로 역학조사에 참석하게 하는 방법(절차)을 구체적으로 정할 것
- ③ 제1항의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해서는 안되는 자를 의미하는 제57조의2제2항의 “연금취급기관장 및 관계 공무원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거나, 제2항을 삭제할 것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63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57조의2(역학조사)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상 질병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질병과 근무환경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상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나 재해유족급여를 청구한 사람 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장의 요구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역학조사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나 재해유족급여를 청구한 사람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요구를 한 사람
2. 해당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관장이 지명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장 및 그 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장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후단에 따라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역학조사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거나 역학조사에 참석하는 자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무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역학조사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내역(역학조사 관련 질병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2.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 및 특수건강진단·정밀건강진단 결과
3.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 제130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 결과
4.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진단 결과
5. 「암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암등록통계사업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암정보사업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학조사에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역학조사의 방법·대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3. 19.]

[시행일: 2025. 3. 20.] 제57조의2

사례 0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7조(하부조직) ①법 제12조에 따라 방송통신대학교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사무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

② ~ ⑥ (생략)

⑦ 제1항에 따라 사무국장에 보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채용조건·임용절차·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 설치령」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현 황

- 동 개정안은 현행 국립대학 사무국장 보임 가능 대상을 기존 일반직공무원에서 교수, 민간 전문가 등으로 전면 개방하고, 국립대학 총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함으로써 사무국장 인사제도 운영의 선진화와 더불어 총장의 인사권 자율성을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그에 따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무국장을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일반직공무원)”에서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내 교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국장에 보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채용조건·임용절차·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 설치령」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하려는 것임

* 국립대학의 사무국장을 기존 일반직공무원에서 별정직공무원으로 바꾸고 그 임용권 행사의 주체 및 임용 방식 등을 담은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대학의 하부조직) 및 제10조(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사무국장 임용에 관한 특례), 개정 절차 진행 중

■ 문제점

● (제7조제1항) 예외 규정의 해석이 모호하여 재량권이 남용될 우려

- 동 조항은 사무국장을 보하는 직렬을 별정직공무원으로 둘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교수(겸임)로 대체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를 두고 있는데, 그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같이 구체적이지 않고 불분명하여 총장에게 주어진 인사의 재량권 행사를 통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교수로 대체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를 구체화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면, 별정직 공무원의 임명보다는 교수로 대체가 용이함에 따라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사무국장직이 인사권자의 재량에 의해 보직교수로 빈번히 채워질 우려
- 또한, 사무국장으로 두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국립학교 설치령」 제10조(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사무국장 임용에 관한 특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설치령 제10조는 기존의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및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이 규정한 상당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격기준은 소속 장관의 협의하여 따로 정하고, 시험의 필요성 등 인사혁신처장관과 사전협의 생략할 수 있으며, 임기는 총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등 행정부 소속 다른 별정직공무원과 달리 정하고 있는 개정 중인 「국립학교 설치령」 제10조는 총장의 인사권 자율성이 강화된 점이 특징임

※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제3조의2¹⁾의 취지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제외대상 법령으로 분류되어 부패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도 되었던 개정 진행 중인 「국립학교 설치령」은 향후 평가대상으로 재분류될 예정

1) 제3조의2(평가대상 제외법령 등) ① 제·개정 법령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법령(이하 “제외법령”이라 한다)에 해당되더라도 필요시 위원회는 직권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헌법기관이 행하는 사항에 대한 법령
2. 국가보안, 예비군·민방위, 국토·통일, 국호·국기·연호, 전례·국경일 등 국가의 안보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령
3. 직제, 후생복지, 제안제도, 급여·수당·문서·관인·차량 관리 등 행정기관의 설치·조직·기능 및 내부운영에 관한 법령
4. 폐지법령, 알기 쉬운 법령 등 정부정책결정에 따라 동시에 일괄 개정되는 법령
5. 그 밖에 고도의 정책추진사항 및 부패유발요인과 명백히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법령

② 위원회는 제외법령의 시의성 제고 및 정책 환경 변화 등 제외법령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경우 제외법령을 지정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④ (생략)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제7조제1항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 일부를 열거하여 특별한 사유의 모호성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로 제한
 - 사무국장을 교수로 대체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임용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적격자가 없거나 지원자가 없어 임용이 지연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으로 수정하거나, “특별한 사유”를 특정하기 어렵다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삭제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64호, 2023. 11. 16., 일부개정]

- 제7조(하부조직)** ① 법 제12조에 따라 방송통신대학교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하거나 교수 중에서 보하며, 사무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
- ② 법 제12조에 따라 방송통신대학교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실·본부·단 등의 하부조직을 두고, 각 하부조직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가 겸직하며, 그 분장사무는 학칙으로 정한다.
- ③ 법 제12조에 따라 부속시설등과 제1항에 따른 사무국 및 제2항에 따른 하부조직에 13개 이내의 과를 둔다. 이 경우 총장은 과의 명칭을 정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각 과의 장은 4급 일반직공무원, 5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록연구관으로 보한다.
- ⑤ 법 제12조에 따라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2개의 범위에서 행정실을 두고, 각 행정실장은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부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⑦ 제1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 임용자격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립학교 설치령」 제10조를 준용한다.

(2)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개요

- 행정권한·사무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대행하는 과정에서 부패발생 소지가 있는지 평가

※ ‘위탁·대행’ 외 ‘행정업무의 부여를 위한 지정’의 경우도 포함하여 평가
지정 규정 중에는 행정업무의 일부를 위임이나 위탁이 아니라 일정한 기관을 지정한 후 그 지정기관이 해당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지정은 행정청의 업무를 민간기관이 수행하게 되므로 민간위탁이나 대행과 유사하여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평가기준으로 평가 필요

- 수탁·대행기관의 선정 절차·운영방식이 투명한지, 관리·감독 수단이 합리적인지, 책임성 확보를 위한 통제 수단이 있는지 등 평가

평가방법

- 위탁·대행의 법적근거, 요건 등 검토
 - 위탁·대행을 실시하는 근거, 요건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위탁·대행의 요건 및 사무를 불명확하거나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무분별하게 위탁·대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
 - 위탁사무의 내용이 위탁의 대상으로 적정한지 검토
 - 수탁기관이 재위탁 할 경우 원 위탁기관의 승인절차나 재위탁 사실 공개 등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위탁·대행의 절차적 투명성 등 검토
 - 위탁·대행의 선정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위탁·대행기관의 선정 방식이나 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아 특정업체의 장기간 독점 위험성이 있는지 검토
- 위탁·대행 대상기관, 선정기준 등을 규정을 공개하고 있는지 검토
- 위탁·대행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의 적정성 검토
 - 위탁·대행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수탁·대행 기관에 대한 평가규정 등이 있는지 검토
 - 위탁·대행 후 업무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보고의무 및 정기점검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수탁·대행 기관의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시 행정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수탁·대행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 검토
 - 수탁·대행 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등의 제재수단이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위탁·대행 업무의 성격상 책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수탁·대행기관의 임직원에게 대하여 벌칙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는지 검토

수탁·대행기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일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83조에서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으므로 개별 법률에서 따로 정할 필요가 없음

- 수탁·대행 기관의 위법 행위 시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평가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위탁·대행을 실시하는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대상사무의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재위탁의 경우 원위탁자의 승인절차의 규정여부 등)에 있는가?	
☐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대행의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등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위탁·대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 위탁·대행으로 대상사무의 공익·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는 없는가?	
☐ 위탁·대행의 대상기관, 선정기준 및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공정한가?	
☐ 수탁·대행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있는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타당하고 내용이 적절한가?	
☐ 위탁·대행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하고 있는가?	
☐ 법정 위탁·대행의 경우가 아닌 지정 등을 통해 수탁·대행자가 선정되거나 취소된 경우 이를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위탁·대행 기간 및 연장 가능 횟수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계속적·형식적·독점적인 위탁·대행의 반복으로 부패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 위탁·대행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수탁·대행기관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을 위한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가? - 자료제출·보고 의무 및 감독기관의 정기점검 등	
☐ 수탁·대행 기관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시 위탁·대행 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 수탁·대행 기관의 위법 행위 시 위탁·대행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재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위탁·대행 취소 등에 대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 취소와 정지사유 구분, 임의취소와 당연취소 구분 여부 등	
☐ 업무성격상 책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수탁·대행기관의 임직원에게 벌칙적용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는가?	
☐ 수탁·대행기관의 위법 행위 시 위탁·대행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한 보조금 등에 대한 회수규정이 있는가? - 제재부가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검토	

사례 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42조(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조치 관련 전문기관 지정)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제8항에 따라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 점검의 기술적 지원 및 제6항에 따른 기술적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평가기준** : 위탁 · 대행의 투명성 · 책임성, 예측가능성

현 황

- 개정령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보호조치 대상이 되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지정기준을 설정하고,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조치 이행점검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시설 보호조치 이행점검과 정보통신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따른 기술적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법 제46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① ~ ② (생략)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에 대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사항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 점검 사항에서 제외한다.

④ ~ ⑤ (생략)

⑥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은 재난이나 재해 및 그 밖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이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 현황, 발생 원인, 응급조치 및 복구대책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생략)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과 제6항에 따른 기술적 지원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⑨ 제3항에 따른 점검의 주기 및 방법, 제6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제점

-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전문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부재
 - 정보통신망법 제46조에 따르면 제3항에 따른 점검과 제6항에 따른 기술적 지원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시행령에선 다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전문기관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저해 및 행정청의 자의적인 수탁기관 선정 등 재량권 남용 우려

검토결과 : 개선권고

-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전문기관의 대상 또는 자격 등 관련 규정 구체화

■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2. 27.] [대통령령 제34258호, 2024. 2. 27., 타법개정]

제42조(보호조치 및 기술지원 전문기관) ① 법 제46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성 확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3. 그 밖에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성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제8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전문기관 및 위탁할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사례 0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5조의3(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등 공개) ① 유동화전문회사등은 법 제33조의2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조에서 “발행내역등”이라 한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수익권증서를 발행하는 신탁회사는 법 제33조의2에 따라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을 공개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1.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등 : 유동화증권의 발행일로부터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통지할 것.
다만, 자산유동화계획(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 또는 이에 준하여 예탁결제원에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다수의 유동화증권에 대한 발행내역등을 최초의 유동화증권 발행 시 일괄하여 통지하는 경우로서 유동화증권 발행 시에 해당 발행내역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2.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등에 대한 변동내용 :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예탁결제원에 통지할 것

가.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등에 변동이 발생한 날

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된 유동화증권의 상환이 모두 완료된 날

② 법 제33조의2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명칭,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

2. 유동화증권에 대한 신용보강 및 신용평가등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공개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평가기준 : 위탁 · 대행의 투명성 · 책임성

현황

- 자산유동화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각종 정보에 대해 공개의무를 부과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보 공개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

-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유동화 증권 발행 및 변동에 관한 정보를 예탁결제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규정
- 법률상 위임에 따라 발행과 관련하여 회차별 미상환 발행잔액, 유동화전문회사의 명칭,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등 공개해야 할 추가적인 정보를 규정

현 황

- 자산유동화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각종 정보에 대해 공개의무를 부과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보 공개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
 -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유동화 증권 발행 및 변동에 관한 정보를 예탁결제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규정
 - 법률상 위임에 따라 발행과 관련하여 회차별 미상환 발행잔액, 유동화전문회사의 명칭,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등 공개해야 할 추가적인 정보를 규정

문제점

-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사항 중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이 정하도록 하여 근거 없는 재량 부여
 -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 제5조의3제2항에서는 법률에서 정한 유동화 증권 발행내역 외에 추가적인 사항을 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 유동화전문회사등(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아니한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33조의3에서 같다)이 유동화증권(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아니한 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준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3조의3 및 제38조의3에서 같다)을 발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유동화증권의 종류 · 총액 · 발행조건 등 발행내역
2. 유동화자산, 자산보유자 등 유동화 관련 정보
3. 제33조의3에 따른 유동화증권의 보유내역
4. 그 밖에 유동화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개정안 제5조의3제2항제3호에서는 제1~2호 외에 한국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적인 공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예탁결제원은 법령상 해당사항을 결정할 권한 부재
- 개정취지는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행내역을 공개할 때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내역을 수정 ·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나 개정안은 한국예탁결제원이 공개사항을 결정하는 것으로 오인 가능

검토결과 : 개선권고

- 동 시행령 개정안 제5조의3제2항제1~2호 외에 추가적인 공개사항은 금융위원회가 고시를 통해 규정
- 유동화전문회사등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을 통지할 때 그 방법을 한국예탁결제원이 정하도록 하여 공개 전 내역을 수정 · 보완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5조의3제1항을 수정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 12.] [대통령령 제34013호, 2023. 12. 19., 일부개정]

제5조의3(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 ① 유동화전문회사등(법 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않은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조의4에서 같다)은 법 제33조의2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조에서 “발행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것

가. 유동화증권(법 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않은 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준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조의4에서 같다)을 발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
나.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등을 변경하거나 유동화증권의 상환을 전부 완료한 경우에는 변경일 또는 상환완료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공개

2. 법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자산유동화계획을 포함한다)에 다수의 유동화증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각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마다 발행 내역 등을 공개할 것. 다만, 처음으로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에 관한 발행내역등을 공개할 때 다른 유동화증권에 관한 내역을 일괄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다른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그 공개 내역에 변경이 있으면 그 변경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3.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등으로부터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을 기초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등을 공개할 것

② 법 제33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명칭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와 위탁업무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위탁업무

4. 유동화증권에 대한 신용보강 내역 및 유동화증권의 신용평가등급

5. 그 밖에 유동화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등 공개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사례 03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10조(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 6. (생략)

② ~ ③ (생략)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평가기준** :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현 황

- 개정안은 법률에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시스템으로 수행 가능한 구체적인 업무 등을 명시하는 한편,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4.2.17.)

제16조의2(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어린이안전교육 실시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그 밖에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제점

- 법률상 근거가 부족한 위탁으로 위임·대행의 투명성 저하 우려
 - 위탁의 경우 그 법적 효과가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등 권한과 책임이 이관되는바, 행정권한의 위탁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함
 - 개정안의 경우 법률에서 시스템 구축·운영을 장관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위탁의 근거는 부재
 - 법 체계의 정합성과 위탁 업무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위탁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
 - 한편, 어린이안전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업무의 위탁 근거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 제16조에서 명시하고 있음
- ※ 제16조(어린이안전교육)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수탁기관·사무의 내용에 대한 공개 규정 부재로 공개성 저하 우려
 - 개정안과 같이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수탁기관 및 위탁사무의 내용을 공개하는 규정이 없어,
 - 수탁기관 선정 등 행정업무 투명성이 미흡하여 관련 부패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참 고

◆ 법령 입안·심사 기준(법제처, 2022)

개별 법률에서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 소재를 명확히하고, 국민 편의를 위해 미리 수탁기관과 합의를 하여 각 개별 법률의 시행령에서는 “위탁한다”로 위탁 여부를 확정적으로 규정한다. 다만,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기관·법인·단체 중에서 전문성을 평가하여 수탁기관을 정할 필요성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에서 위탁 여부를 확정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위탁할 수 있다”로 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 및 위탁사무가 결정된 경우에는 국민이 수탁기관 및 위탁사무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서 수탁내용 등을 고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반드시 두도록 한다.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위탁의 근거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
- 시행령에 위탁 관련 사항을 규정할 경우 수탁기관 및 위탁사무의 내용을 고시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

■ 개선결과

- 법률상 근거 없는 업무 위탁 조항 삭제



(3) 재정누수 가능성

개요

- 예산이나 기금으로 보조금, 출연금 등을 지원하거나 국·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는 등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중복 지원되고 있는지, 재정누수 가능성은 없는지 등 평가
- 재정지원 대상 선정·운영에 있어서의 투명성 확보, 중복지원 등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 사후적인 관리·감독을 통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부패 유발요인을 평가

평가방법

- 재정지원의 관계규정 및 법적근거, 요건, 절차 등 검토
 - 평가 대상 조문에 재정지원의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 일반법(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등)의 관련규정과 부합하는지 검토
 - 재정지원 근거, 목적, 요건,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다른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는지, 다른 재정지원과 비교하여 지원수준이 적절한지 검토
- 재정지원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검토
 - 재정지원 결정주체, 결정방법, 제출서류, 신청자의 범위, 신청절차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재정지원 대상 선정기준이나 그 절차 등이 공개되어 재정지원 결정의 공정성·투명성이 확보되는지 검토

● 재정지원의 사후관리 및 책임성 확보 수단 검토

- 보고의무 및 실적보고서 제출 등 재정지원사업의 효과성 확인 수단이 있는지 검토
- 재정지원 후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절차 등 재정지원사업의 목적 달성 확인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재정지원 신청 등이 위법한 경우, 지원 취소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및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환수 규정 등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평가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및 요건은 구체적인가?	
☐ 지원방법(계약방식 등)은 지원의 성격에 부합하는가?	
☐ 타 법령에 유사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해당 재정지원이 꼭 필요한가?	
☐ 지원수준은 다른 지원 제도와 비교할 때 적절한가?	
☐ 지원자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 설정 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해당 세부기준은 공개되어 있는가?	
☐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 결정절차, 선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는가?	
☐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선별할 수 있는 평가수단이 마련되어 있고, 위 평가의 공정성 확보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 지원된 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출관련 증거자료의 보관, 사업결과 제출의무 등은 규정 되어 있는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 지원처분 취소절차 등	
☐ 목적외 사용 등 위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 환수 또는 일정기간 지원제한 조치 등	
☐ 징벌적인 추가 환수조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 지원금의 ○배 추가 환수 등	

사례 이 평생교육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23조의2(평생교육기관 평가 및 인증 운영)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평가 및 인증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2. 법 제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3. 법 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4. 법 제21조에 따른 시·군·구평생학습관
5. 법 제21조의3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기관 평가 및 인증 대상 기관으로 정하는 기관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평가 및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생교육기관 기본 요건

2. 평생교육기관 운영 요건

3. 평생교육기관 역량 요건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기관 평가 및 인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기관 평가 및 인증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 그 밖에 평생교육기관 평가 등의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을 평가 및 인증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그 밖에 평생교육기관 평가 및 인증의 절차, 방법, 유효기간, 결과 공개 및 활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의3(평생교육시설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10과 같다.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11과 같다.

③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12와 같다.

④ 법 제34조의2제7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공시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해 총괄 관리기관과 항목별 관리기관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 그 밖에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의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⑤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해당 공시일로부터 최근 3년 동안 공시한 정보를 함께 공시해야 한다.

■ 평가기준 : 재정누수 가능성,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 현 황

- 동 개정안은 ‘문자해득교육’이 ‘문해교육’으로 용어가 정비되어 시행령에 이를 반영하고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추가되어 시행령의 심의사항 관련 조문을 변경하는 등 앞서 개정된 법률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개정으로,
- 그 중 시행령 제23조의2¹⁾는 법 제28조의 신설로 평생교육기관의 평가 · 인증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령에서 그 절차와 방식을 정하려는 조문이고, 제23조의3은 법 제34조의2²⁾ 신설로 교육부장관 및 시 · 도교육감 소관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정보공시 제도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법령상 공시항목에 대한 범위, 공시횟수, 그 시기 등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 1) 「평생교육법」 제28조의2(평생교육기관의 평가 및 인증)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기관의 신청에 따라 기관 및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의 운영 ·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 또는 인증의 운영 · 관리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기관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의 시행, 전문기관에의 위탁,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평생교육법」 제34조의2(평생교육시설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그 시설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공시된 정보(이하 “공시정보”라 한다)를 시 ·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11. (생략)
 ② ~ ⑦ (생략)
 ⑧ 그 밖에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공시횟수, 그 시기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제점

- 법 제28조의2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평가 및 인증하는 기준과 동 평가 및 인증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전문기관의 요건에 구체성과 객관성 미흡
 - 법 제28조의2에 따른 평가 및 인증제도는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을 촉진” 하기 위해 법률 제19345호로 신설된 조문으로,
 - 동 조문 신설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기관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인센티브 제공)을 하려는 경우 법 제28조의2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하여 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이 법 제28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제23조의2 제2항은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및 인증 기준을 “평생교육기관 기본 요건, 운영 요건, 역량 요건,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기관 평가 및 인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³⁾” 과 같이 규정 하려고 하므로, 인증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청이 평생교육기관을 인증함에 있어 과도한 재량행사가 우려되고 인증을 신청하는 기관 입장에서도 좋은 평가 및 인증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역량 요건 등을 쉽게 알기 어려움
 - 또한, 평생교육기관 평가 및 인증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예시(범위)를 담은 제23조의2 제3항 제2호를 “그 밖에 평생교육기관 평가 등의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으로, 법 제34조의2제7항에 따라 공시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총괄 관리기관과 항목별 관리기관을 열거한 개정안 제23조의3 제4항 제2호를 “그 밖에 평생교육 시설 정보공시의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으로 규정하게 되는 경우, “관련 업무 수행에 관한 전문성” 판단에 교육부(장관)의 재량이 지나치게 넓다는 점에서 해당 규정은 위탁을 수행할만한 기관 또는 법인의 범위에 관한 대강의 기준조차 예측하기 어려운 규정으로 보여짐

3) 개정안 제23조의2 제2항 각 호

-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을 촉진”하려는 평생교육기관 평가 및 인증제도의 실효성과 평가 및 인증 결과의 객관성·투명성을 저해하여 관련 업무에 투입되는 예산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음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① 제23조의2 제2항 각 호에서 평가 및 인증 기준으로 제시한 기본, 운영, 역량 요건 등을 동 조문 혹은 별표로 구체화할 것
- ② 제23조의2 제3항 제2호를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기관 평가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 수정하고, 하위법령 내지 행정규칙으로 평생교육기관 평가 등의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
- ③ 제23조의3 제4항 제2호를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법인’으로 수정하고, 하위법령 내지 행정규칙으로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

■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4. 1. 12.] [대통령령 제34013호, 2023. 12. 19., 일부개정]

제23조의2(평생교육기관의 평가 및 인증)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평가 또는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 시설·장비 및 인력의 확충·관리의 적합성

2. 교육과정의 기획·운영 등의 체계성 및 특성화 실적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기관 평가 또는 인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평가 또는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의 기획·운영 등의 체계성 및 특성화 실적

2.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 평가 또는 인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에 따라 평생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을 평가한 결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평가 및 인증을 신청한 평생교육기관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평생교육기관은 옥외간판, 각종 문서, 홍보물 및 그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해당 인증사실 및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평가 또는 인증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제3항에 따른 인증서(교육부장관 명의로 된 인증서를 말한다)의 발급 업무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진흥원

2. 평가 또는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 또는 인증의 신청 등 평생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의 평가 또는 인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행정절차

(1) 접근의 용이성

개요

- 정책결정 및 이의제기 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전문가의 참여제도 내지 의견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지 평가
- 의견진술 제도 등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행정절차에 참여·접근이 가능한지,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등 실효성 있는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지 판단 (하위법규에 시행을 위한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판단)

평가방법

-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참여제도의 실효성 검토
 - 참여제도에 이해당사자, 일반국민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참여 기회는 충분한지, 참여대상이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
- 참여제도의 필요성 검토
 - 별도의 참여제도가 없거나 당해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검토
 - 현재 별도의 제도나 장치가 없지만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참여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 참여대상이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참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 있는지 검토

평가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국민 참여를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 별도의 참여 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편리한가?	
☐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 행정의 참여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 별도의 참여 장치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참여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	

사례 0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5조의2(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방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에 따라 매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및 납품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선정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 **평가기준** : 접근의 용이성, 예측 가능성

■ 문제점

-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선정방법 및 절차에 대한 예측 가능성 미흡
 -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자에게 세부사항을 공고한다고 규정하여 접근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음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공개하는 장소를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정보 접근성 강화

■ 개선권고 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10. 4.] [중소벤처기업부령 제79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5조의2(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 방법 등)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의3 제1항에 따라 매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및 납품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선정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하여 중소기업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주는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2) 공개성

개요

- 평가대상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양질의 정보가 이해관계자,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되고 있는지 판단
- 민원인 등의 정보공개 신청에 따른 소극적인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관련정보를 인터넷게시, 개별통지 등을 통해 수시로 알려주는 적극적 공개도 포함

평가방법

- 정보제공 관련규정 검토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관련규정 검토
 -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 · 제공시기 · 제공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
- 정보제공 관련규정 실효성 검토
 - 이해관계자 또는 일반국민이 공개된 정보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검토
 - 정보공개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검토
-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검토
 - 별도의 정보공개 제도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검토
 - 현재 별도의 제도나 장치가 없지만 공개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 공개대상이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평가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정보공개 제도를 두고 있는가?	
☐ 정보공개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 또는 민원인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가?	
☐ 정보공개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 별도의 정보공개 제도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정보공개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	

사례 0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평가대상 조문

제27조의2(우수근로자의 선발 등) ① 법 제29조제1항¹⁾에 따른 우수근로자는 업무 중요도, 업무수행 성과 등을 평가하여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근로자를 선발하려면 미리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③ ~ ④ (생략)

■ **평가기준** : 공개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현 황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은 중소기업에 우수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문화생활 등을 위한 사업을 우수 인력을 선발하여 국내 및 해외 연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기존 법률에 장기근속기준을 10년 이상으로 정해놓아 정부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는 우수 근로자 선발에 한계가 있었음

* 상당수의 중소기업 근로자가 장기근속 대신 중도 퇴사 또는 이직하는 경우가 잦음²⁾

- 이에 우수근로자 선발 기준이 되는 장기 근속의 기간을 5년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³⁾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우수근로자를 선발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려고 하는 것임

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9조(우수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매년 중소기업, 협동조합등 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같은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근로자를 선발하여 국내 및 해외 연수와 그에 따른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 기준 및 절차와 구체적인 지원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중소기업 신입직 조기퇴사율 16.5%...5명 중 1명 그만둬 (2021.08.04., YTN)
대졸 취업자 5명 중 1명은 1년도 안 돼 이직한다 (2022.12.26., 조선일보)

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 2023. 4. 19.] [법률 제19018호, 2022. 10. 18., 일부개정]

문제점

-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및 우수근로자를 선발하는 주체가 불분명함
 -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우수근로자의 선발 및 지원하는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 또한 관련하여 우수근로자 선발에 대한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고주체가 되는 해당기관을 알 수 없음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우수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주체(해당기관·부처) 명확히 규정하고,
- 우수근로자 선발 평가기준 및 절차, 선발계획을 어느기관(부처) 홈페이지에 공고할 것인지 명시

개선권고 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3. 4. 19.] [대통령령 제33403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27조의2(우수근로자의 선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근로자를 매년 같은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 중에서 담당 업무의 중요성, 업무수행 성과의 우수성 등을 평가하여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근로자를 선발할 때에는 선발절차 및 평가기준 등이 포함된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업무수행 능력 배양 및 신기술과 경영기법 습득 등을 위한 국내외 직무연수를 지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근로자의 선발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사례 02 안보범죄 등 대응업무규정

평가대상 조문

- 제4조(유류물 및 임의제출물 수거 등)** ① 국정원은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류물을 습득하거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수거하여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응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 ② 국정원은 대응업무를 위하여 제1항 전단의 물건에 관하여 분석·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국정원은 안보범죄등 대응 유관기관에 안보범죄등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정원은 안보범죄등 대응 유관기관에 제1항 전단의 물건을 송부할 수 있다.
- ④ 국정원은 안보범죄등 대응 유관기관에 제1항 전단의 물건을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자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원장이 별도로 처리 방법을 정할 수 있다.
1. 유류물로서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
 2. 임의제출물 중 소유자등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 중 북한의 정보활동과 관련된 경우

■ **평가기준** : 공개성

■ 현 황

-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후속조치로 국가안보 공백 방지를 위해 국가정보원법상 확인·견제·차단 등 대응조치권을 구체화하고, 수사기관을 포함한 각급 국가기관과 정보공유 및 협력 등을 규정한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제정

■ 문제점

- 개정안 제4조에 국정원이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습득하거나 수거하여 보관한 유류물 및 제출물 관리절차의 투명성 부족
 - 국정원이 안보범죄등의 정보제공을 위해 보관중이던 유류물 및 제출물을 유관기관에 송부하거나 송부하지 않았으나 반환이 어려운 경우 국정원장이 별도로 처리 방법을 결정 가능

- 유류물 및 제출물의 습득과 처리 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습득과 보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및 서식 부재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제4조에서 안보범죄등의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유류물 및 제출물을 습득하여 보관하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는 서식을 마련하고 제출물의 소유자에게 그 서식을 교부

개선권고 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988호, 2023. 12. 19., 제정]

제5조(유류물 및 임의제출물) ① 국가정보원장은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유류물(이하 “유류물”이라 한다)이나 소유자·소지자·보관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이하 “임의제출물”이라 한다)을 수거하여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정보원장은 대응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습득하거나 수거해야 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류물 습득 조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의제출물 수거 조서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정보원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임의제출물 목록을 2부 작성하여 1부는 소유자등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대응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에 대한 분석·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대응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에 제3항에 따른 분석·검증 결과를 제공하거나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을 송부할 수 있다.

⑤ 국가정보원장은 대응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 보관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이 그 처리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유류물로서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
2. 임의제출물 중 소유자등이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 중 북한의 정보활동과 관련된 경우

사례 0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11조의10(투자진흥지구의 관리) ①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5에 따라 지정된 투자진흥지구의 투자 실행 여부를 반기마다 1회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의6부터 제11조의10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새만금청장이 따로 정한다.

■ 평가기준 : 공개성, 예측가능성

■ 현 황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2023. 6. 28. 시행)으로 새만금사업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게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가능
 -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상사업 및 투자규모,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 조건과 절차를 규정

■ 문제점

- 투자진흥기구의 지정절차, 방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새만금개발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하여 법령의 공개성 및 예측가능성 저하
 - 투자진흥기구의 지정절차, 방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와 입주기업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시행령에서의 위임을 통해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고시로 규정 필요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고시를 제정하여 규정하도록 개정안 수정

■ 개선권고 결과

-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새만금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한 조문 삭제

사례 04 소방공무원 징계령

평가대상 조문

제18조(징계등의 집행) ① 징계등의 집행권자는 징계의결등의 통지를 받은 날(제2항의 경우에는 그 제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처분등 사유 설명서에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등된 자에게 교부(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파면, 해임 또는 강등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가 교부)함으로써 징계처분등을 집행한다.

②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자는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 해임 또는 강등의 의결을 통지 받았을 때에는 그 집행권자가 상급기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 정본을 보내어 그 집행권자에게 파면, 해임 또는 강등 처분을 제청하여야 한다.

③ 집행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할 수 있다.

④ 법 제75조제2항제3호의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말한다.

1.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음 각 목의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가. 다른 공무원

나. 징계처분의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 및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직원

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말한다)

2. 직무권한 또는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피해자가 개인인 경우로 한한다)

평가기준 : 공개성, 예측가능성

현 황

-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비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갑질 비위의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는 규정을 신설

국가공무원법

제75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① (생략)

② 처분권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3.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행위

문제점

- 동 시행령 개정안 제18조제3항에서 징계사유가 성폭력범죄나 성희롱인 경우 그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것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 침해 가능
- 「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 징계령」에서는 징계사유가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일 경우 그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음을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규정

공무원 징계령

제19조(징계처분등) ①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처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의 피해자에게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④ ~ ⑥ (생략)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7조(징계등 처분) ① 징계등 처분권자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등 처분을 해야 한다.

② (생략)

③ 징계등 처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의 피해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④ ~ ⑥ (생략)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징계처분의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반드시 안내하도록 개정안 수정

개선권고 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피해자가 통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

소방공무원 징계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804호, 2023. 10. 10., 일부개정]

제18조(징계처분등) ① ~ ③ (생략)

④ 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와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할 수 있다.

⑤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요청으로 처분권자가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⑥ 제5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처분결과와 통보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3) 예측 가능성

개요

- 업무처리의 과정 및 결과를 누구나 충분히 예측가능한지, 필요한 경우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지 판단
- 이해관계자 등이 자격기준 및 필요한 제출서류를 충분히 알 수 있게 하고, 규정되어 있는 절차에 의해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하여 불투명한 결과에 대비하기 위한 부패행위를 예방

평가방법

- 행정절차 관련규정의 구체성 검토
 -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당해 법령 또는 하위법규에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과 업무의 처리절차가 어떻게 진행 되는지에 대해 당해 법령 또는 하위법규에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행정절차 관련규정 이해의 용이성 검토
 -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의 사용은 일반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사용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검토
- 예측가능성 판단
 - 모호한 기준 중의적·다의적 표현 등으로 행정청의 정당한 범위를 넘어 재량을 행사하거나, 민원인이 처리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지 검토

평가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기간과 처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에 대해 당해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가?	
☐ 평가대상 법령 및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의 표현이 전반적으로 일반 국민의 수준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가?	
☐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의 사용은 일반국민의 이해와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 민원신청 시 필요한 요건절차기한 등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분명한가?	
☐ 조건부 인허가, 사전 인허가 등 내인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내인가 가능여부, 신청요건, 신청절차, 처리기한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	
☐ 관계기관의 협의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이 누구인지, 협의 승인의 기준은 무엇인지,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민원인이 업무처리절차 또는 업무처리기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이나 도움 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낮은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낮은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가?	

사례 0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14조의6(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① (생략)

②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담당 사업별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달리 정하거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사무공간을 갖추고 있을 것

③ 연동지원본부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2. 전담조직 보유 현황
3. 전담인력 보유 현황
4. 시설 명세서
5.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④ ~ ⑥ (생략)

⑦ 연동지원본부의 세부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평가기준 : 예측가능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현황

- 최근 원재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다수의 수탁기업은 위탁기업과의 거래상 지위에 따른 협상력 차이로 인해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음
- 이에,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9176호, 2023. 1. 3. 공포, 2023. 7.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문제점

-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요건충족 여부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 기준 부재
 - ‘전담조직, 전담인력, 사무공간’을 갖출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전담조직의 규모와 전담인력의 수, 사무공간의 규모 등이 부재하여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지정 여부가 달리 결정될 우려가 있고,
 - 연동지원본부 지정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해관계자의 예측 가능성이 저해됨
- 연동지원본부의 세부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시될 사항이나, 공고로 정하고 있음
 - 공고는 법령이 정하는 바와 상관없이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이므로 법령의 근거가 없더라도 행정청이 공고를 할 수가 있고, 고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이므로 법령의 근거가 필요함¹⁾
 - 동 법 제24조제5항에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동 시행령안 제14조의6 제7항에 법령에 근거 없이 일시적 또는 단기간 동안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공고로 규정하고 있어 분명하고 확정적인 규정이 없어 재량권자(행정기관)의 과도한 재량권 행사가 우려됨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갖추어야 할 연동지원본부의 전담조직의 규모, 전담인력의 수, 사무공간의 규모 등 지정 요건을 고시로 위임 또는 별표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
- 연동지원본부의 세부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고시에 위임하여 재량권자의 재량남용 방지

1)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 고시 및 공고의 구별 기준에 관한 검토

■ 개선권고 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0. 4.] [대통령령 제33768호, 2023. 9. 26., 일부개정]

제14조의6(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연동지원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추는 것

2. 6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갖추는 것.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지정받는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전담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3. 사업을 수행하는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공간을 갖추는 것.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지정받는 경우에는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의 사무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2.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한 계획서

3.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은 자는 전년도의 운영실적 및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른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동지원본부의 세부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사례 02 수산업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26조(신고어업) ① ~ ④ (생략)

⑤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어업의 도구를, 수면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업시기와 조업구역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평가기준 : 예측가능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현황

- 신고어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와 조업시기 및 조업구역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어업보증금관리센터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대상과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문제점

- 개정안 제26조제5항은 신고어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의 세부사항을 법령에서 나열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고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 ‘수면’을 관리하는 어업조정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업시기와 조업구역을 지역별 특성에 맞게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로 규정하여 문맥 상 ‘도구’ 또한 ‘임의 고시’로 오인할 여지가 있음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신고어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의 명확한 고시 규정

■ 개선권고 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수산업법 시행령

[시행 2024. 1. 12.] [대통령령 제34119호, 2024. 1. 9., 일부개정]

제26조(신고어업)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어업(이하 “신고어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나잠어업(裸潛漁業):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낚 · 호미 · 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 해조류,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 · 채취하는 어업
2. 맨손어업: 손으로 낚 · 호미 · 해조틀이 및 갈고리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 · 채취하는 어업
- ② 법 제4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고한 조업장소가 제9조제3항에 따라 어업면허의 금지가 공고된 수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③ 법 제48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조업수역의 조정이나 조업의 허용 또는 제한
 2. 신고어업의 종류별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구를 사용할 것
- ④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가 효력을 잃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어업신고증명서를 회수해야 한다.

사례 03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18조(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등) ① ~ ② (생략)

③ 조합이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탁하거나 1년 이내에 공개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공개경쟁입찰을 1회 이상 실시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이해관계자가 매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개경쟁입찰이 유찰 또는 보류되거나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으로 1년 이내에 매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합은 매각기한을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최초 1년의 매각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중앙회장에게 매각연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평가기준 : 예측가능성

■ 현 황

- 「신용협동조합법」 개정(2023. 9. 22. 시행)에 따라 조합은 부동산의 소유가 제한되며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조합이 소유하게 된 부동산의 처분 방법 및 절차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탁하거나 1년 이내 공개경쟁입찰 등으로 매각하여야 하며 입찰이 유찰 또는 보류되는 등에는 매각기한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마련

■ 문제점

- 조합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그 매각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한 예측가능성 부족
 -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조합이 수의계약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공개경쟁입찰을 1회 이상 실시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이해관계자가 매각을 요구하는 경우로 규정

- 수의계약은 계약상대방에게 특혜를 줄 우려가 있어 그 조건은 명확해야 하며 법령에서 행위의 주체는 특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하나 ‘이해관계자’는 범위가 넓어 특정이 어렵고 의미가 불명확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신용협동조합이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

개선권고 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2023. 10. 19.] [대통령령 제33816호, 2023. 10. 17., 일부개정]

제18조(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조합 또는 중앙회가 취득할 수 있는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장(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사택 · 기숙사 · 연수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3.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② 조합 또는 중앙회는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장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③ 조합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매각
2. 해당 부동산의 소유일부터 1년 이내에 일반경쟁입찰로 직접 매각. 다만, 일반경쟁입찰을 1회 이상 실시해도 매각되지 않거나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채권자, 채무자, 물상보증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④ 조합은 제3항제2호의 방법으로 매각하려던 부동산을 같은 호 본문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소유한 부동산의 처분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사례 0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23조의6(예방접종 휴가 비용지원 절차)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접종한 사실 및 접종한 다음날이 근무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수명세서 등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유급휴가 비용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② (이하 생략)

■ 평가기준 : 예측가능성

■ 현 황

- 동 개정령안은 지역사회로의 급격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 등의 예방접종을 독려하고자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제32조의2(예방접종 휴가)가 신설됨에 따라, 위 취지를 고려하여 예방접종의 유급휴가비 지원을 위한 예방접종의 유형, 지원 대상자 및 비용지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419호, 23.5.19. 공포) 제32조의2(예방접종 휴가) ① 사업주는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 및 비용의 지원 범위, 신청·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그 중, 제26조의2 제1항은 제23조의5(예방접종 휴가 비용지원 대상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제공한 유급휴가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기 위해 사업주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음
 1. 근로자가 접종한 사실 및 접종한 다음날이 근무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수명세서 등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유급휴가 비용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문제점

- 신청자인 사업주의 입장에서 당해 신청과 관련하여 준비하여야 할 사항을 쉽게 예측할 수 있어야 함
 -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 유급휴가 비용의 지원범위는 “예방접종한 다음날 1일” 이므로, 지원금 신청시 유급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퇴사하고 없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이 법에 따른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에도,
 - 사업주가 유급휴가 비용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중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는 “계속 재직” 이라는 표현이 해당 근로자가 “신청일 현재에도 계속 재직하는” 의 의미로 오해될 우려가 있음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제23조의6 제1항 제2호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서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가 접종한 다음날 재직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수정

개선권고 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9. 29.] [대통령령 제33757호, 2023. 9. 26., 일부개정]

제21조의3(예방접종 휴가 비용지원 절차) ① 법 제3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근로자가 예방접종을 받은 사실 및 예방접종을 받은 다음 날이 근무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근로자가 예방접종을 받은 다음 날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② (이하 생략)

부패통제

(1) 이해충돌 가능성

개요

-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 등 이해충돌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해충돌 방지장치가 규정되어 있는지 등 부패유발요인 평가

평가내용

- 이해충돌 가능성 검토
 - 위원 및 임직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야기하거나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결정이나 심의 등을 하는 경우 개인적 이해관계로 인해 결정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유무 검토
 - 자격요건 및 임기·연임 규정, 제척·기피·회피, 해촉, 공무원 의제, 겸직·영리행위금지 등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이해충돌 방지 장치의 적정성 검토
 - 자격요건의 구체성, 연임제한 규정의 유무 검토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해당 사안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관련된 사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할 수 있는 제척규정이 있는지 검토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위촉된 위원 등이 이해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겸직금지·영리행위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지를 검토

● 이해충돌 방지제도 규범력 강화수단 검토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관련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 심의 등에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 시 뇌물죄 등 형벌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

평가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업무수행에 있어 부당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이해관계의 가능성이 있는가?	
☐ 위원 등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임기, 연임제한 등을 규정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는 데서 오는 유착관계 형성을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해당 사안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사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제척제도의 규정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 이해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검직이나 영리행위 금지 규정이 있는가?	
☐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관련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 심의 등에 공정성을 해친 자를 제재하기 위한 해촉 규정을 두고 있는가?	
☐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시 뇌물죄 등 형벌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위원회 회의자료를 작성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사례 0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42조의2(친환경벌채 지원기준 등) ①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생태·경관·재해위험을 최소화하여 벌채한 경우(이하 “친환경벌채”라 한다)의 지원금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와 입목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입목소유자)로서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벌채를 실시한 자. 다만, 입목소유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그러하다.
2. 예상되는 수익금 : 입목의 시장가격에서 벌채 및 운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
3. 지원금 지급대상 입목축적의 최대 한도 : 벌채구역 내 총 입목축적의 100분의 30
4. 지원금 지급대상 벌채구역 면적의 최저 한도 : 5만제곱미터

② ~ ⑥ (생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지원범위, 지원신청, 현지조사, 지원금액 산출 및 지급절차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42조의6(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① 법 제36조의5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벌채 또는 굴취구역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심의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며, 지방산림청은 지방산림청장이 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이 된다.

1. 산림경영·산림자원조성·산림재해·산림생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관련 분야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그 밖에 산림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법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의 신청을 30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다만, 기간 내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려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 평가기준 : 이해충돌 가능성, 공개성, 예측가능성

■ 현 황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3. 6. 28. 시행)으로 생태·경관·재해위험 등을 최소화하여 친환경벌채를 실시한 경우 남겨진 입목으로 인한 산림 소유자의 손실을 국가가 지원 가능
 - 남겨진 입목의 예상 판매 수익금에 대한 지원대상자, 지원 범위, 대상 면적, 지원 신청 방법 등을 시행령에 규정
- 동법의 개정(2023. 6. 28. 시행)으로 대상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입목벌채 시 지역 및 시민단체의 의견수렴 강화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의 구성, 임면 및 자격, 임기, 심의기간 등을 시행령에서 규정

■ 문제점

- 친환경벌채에 대한 지원의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여 법령의 공개성, 예측가능성 저하 우려
 - 지원범위, 지원신청, 현지조사, 지원금액 산출 및 지급절차 등은 산림 또는 입목 소유자의 권리와 관계되는 사항이므로 내부지침 등으로 규정할 경우 당사자의 권익 침해 우려 있음
-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허가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그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미비
 - * 법률에서는 허가 없이 입목벌채를 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의 벌칙을 받게 되며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에 대해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음
 - 위원회의 개의회 의결에 대한 정족수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심의절차에 대한 공개성 및 예측가능성 저하

-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 후 자격미달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해촉규정이 없어 위원회 구성·운영의 객관성·공정성 저해 우려
-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없어 안전과 사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 등이 심의에 참여할 우려 등 이해충돌방지 미흡

검토결과 : 개선권고

- ① 친환경별채에 대한 지원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별도 고시를 제정하거나 기존 고시에 추가
- ② 심의위원회의 정족수 규정 마련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
- ③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해촉 규정 마련
 - 필요시 연임을 제한하고 심신장애, 비위사실, 직무태만 및 품위손상이 발생하거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위원 해촉
- ④ 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 (제척) 위원회의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자는 그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
 - (기피)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 결정
 - (회피) 제척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조사의 심의·의결에서 회피

개선권고 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2. 21.] [대통령령 제33993호, 2023. 12. 19., 일부개정]

제42조의2(친환경벌채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①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생태·경관·재해위험을 최소화하여 벌채(이하 “친환경벌채”라 한다)를 한 경우의 지원금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금 지원대상자: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토지 소유자와 입목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입목소유자를 말한다)로서 친환경벌채를 실시한 자
2. 예상되는 수익금 산정방법: 입목의 시장가격에서 벌채 및 운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하여 산정
3. 지원금 지급대상 입목축적(立木蓄積)의 범위: 벌채구역 내 총 입목축적의 100분의 20 이하
4. 지원금 지급대상 벌채구역의 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현지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을 결정해야 한다.

④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친환경벌채에 따라 남겨진 입목에 대하여 입목벌채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에 지원금 지급일부터 반환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가산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환하지 않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신청, 현지조사, 지원금 산출 및 지급절차 등 친환경벌채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3조의6(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① 법 제36조의5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목벌채등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허가 사항
 2. 그 밖에 입목벌채등의 허가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산림별 관할 행정청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산림청 소관 국유림: 해당 산림 소재지의 지방산림청장
2. 제1호 외의 국유림·공유림 및 사유림: 해당 산림 소재지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부단체장. 이 경우 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한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산림경영·산림자원조성·산림재해·산림생태 등 산림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상의 공무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산림 분야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자격 취득 전의 실무경험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산림·환경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3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3조의7(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 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신청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건의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법인이 해당 심의 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심의 건의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심의 건의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사례 02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2조의2(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제2조제3항의 기관별로 둔다.
- ② 심의위원회는 30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 ⑦ (생략)

■ 평가기준 : 이해충돌 가능성

■ 현 황

- 예술활동 증명업무 수행기관 확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단독 수행하는 예술활동 증명업무를 지자체 출연·출자 기관도 처리할 수 있도록 확대
- 예술활동 증명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등 규정
 - (위원구성) 성별을 고려해 30명 이상, 임기 2년, 연임 가능
 - (이해충돌방지)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 제척·회피 및 해촉 사유 해당 시 명단과 사유를 문체부장관에게 통보

■ 문제점

- 심의위 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 부재
 - 개정령안은 예술활동 증명 관련 심의위 위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제척·회피, 해촉 등을 규정
 - 위원 임기의 경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라고만 정하고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장기 연임으로 인한 청탁 등 부패 발생 가능성

※ 개정령안은 기존 시행규칙에서 정한 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을 개정령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위원회 기능은 기존 시행규칙과 동일하고 위원 임기(1년→2년) 및 연임(두 차례만 연임→연임) 규정은 변경

- 행정기관위원회법상 위원의 임기 규정과 배치
 - 행정기관위원회법은 당연직, 고도의 전문적 지식·기술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규정
 - 개정령안 심의위의 경우 예술활동 여부를 작품발표 횟수 등과 같은 정량적 기준으로 판단(예술활동증명에 관한 세부기준, 안 별표1)
 - 고도의 전문적 지식·기술이 필요한 위원회로 보기 어려워 위원의 임기는 제한하는 것이 타당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위원의 임기와 관련해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 마련

개선권고 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4. 2. 9.] [대통령령 제34160호, 2024. 1. 23., 일부개정]

- 제2조의2(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관등의 장이 위촉한다.
1. 문화예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법조계·교육계·언론계 또는 경제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사례 0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 등 (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 ③ (생략)

④ 위원장은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 등에 해당되어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외할 수 있다.

■ 평가기준 : 이해충돌 가능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현 황

- 법률의 개정으로 별도의 위원회로 운영 중인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사위원회’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분과로 편입
 - 이에 따라, 분과 위원도 시행령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규정(현재는 시행령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의 미적용)
- 평가대상 조문 제4항은 신설되는 조항으로 편입되는 분과와 관련하여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 ▶ 제17조의3(사전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③ 위원장은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연구 등을 수행하는 등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그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문제점

- 위원의 제척 여부가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등 자의적으로 결정될 우려가 있음
 -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에서 당연히 배제되는 것으로 별도의 판단 절차는 불필요
 - 특히, 개정안의 경우 제척 사유 해당 여부나 심의 제외 여부가 위원장의 재량에 있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음

※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시행령으로 상향하는 것이나, 본과 편입으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적용받게 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현행 시행규칙의 입법 취지는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임

참 고

◆ 법령 입안·심사 기준 2022(법제처)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은 제척사유의 존재 여부 또는 주장 여부를 불문하고 제척 결정의 유무에 관계 없이 해당 안건에 관한 회의에서 당연히 배제되는 것이고, 제척 결정은 이를 확인하는 성질을 가지는 것에 불과한데, 만일 “제척 결정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원회가 결정한다.” 와 같이 별도의 제척 신청 또는 결정에 관한 규정을 둔다면 당사자의 제척 신청 또는 제척 여부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만 제척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제척사유의 존부를 다투는 경우에는 제척신청이 아니라 제척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제척 사유 해당 여부나 심의 제외 여부가 위원장의 재량에 있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는 규정 삭제

개선권고 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조문 삭제

(2)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개요

-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평가

평가방법

- 관련 부패사례 검토
 - 평가대상 법령상 업무 및 타기관 유사업무와 관련하여 과거 부패사례가 있었는지 검토
- 부패방지장치 관련 규정 및 실효성 검토
 - 부패방지장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관련규정 및 실제 운영사례 검토
- 부패방지장치의 필요성 검토
 - 부패방지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부패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내부 통제장치 도입 필요성 검토
 - 부패방지장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

평가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평가대상 법령상 업무 및 유사업무와 관련하여 부패사례가 없었는가?	
☐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 부패방지장치가 있다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가? - 관련 규정 및 실제 운영사례 검토	
☐ 부패방지장치가 있음에도 부패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가?	
☐ 별도의 부패방지장치가 없다면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부패방지를 위한 별도의 내부통제장치 도입이 필요한가?	

사례 0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28조(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상습 채무 불이행자의 성명 등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공사의 사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공사의 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공사 소속 임원 또는 직원 3명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등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부동산, 금융, 법률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중 3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2명
④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가 정한다.

■ 평가기준 : 이해충돌 가능성,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 현 황

- 악의적인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의 성명 등 정보 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가 「주택도시기금법」에 마련되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 필요
 -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 제외사유, 공개방법 및 공개절차,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운영사항 등을 시행령에 규정

문제점

-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운영사항에 객관성·공정성 결여 우려 존재
 -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없어 심의 대상 임대인과 사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 등이 심의에 참여할 우려 등 이해충돌 방지 미흡
 - 직무 관련 비위사실, 직무태만, 품위손상이 있거나 회피해야 할 안전에 참여한 경우 등 공정한 심의·의결을 저해한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 부재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추가
 - (제척) 위원회의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자는 그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
 - (기피)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 결정
 - (회피) 제척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조사의 심의·의결에서 회피
-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저해한 위원을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해임이나 해촉할 수 있도록 해촉 요건 규정

개선권고 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시행 2023. 9. 29.] [대통령령 제33730호, 2023. 9. 19., 일부개정]

제2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30조(위원의 해촉) 공사의 사장은 제28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사례 02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4조(모빌리티지원센터)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이 만료되면 모빌리티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하여 5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빌리티 혁신의 효율적 지원에 필요한 인력·기술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12조(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국방부차관
2.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3. 경찰청장

② ~ ⑥ (생략)

⑦ 위원장은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⑧ 위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모빌리티혁신위원회가 정한다.

평가기준 : 부패방지의 체계성, 특혜발생 가능성, 공개성, 이해충돌 가능성

현황

- 모빌리티 규제를 혁신하고, 모빌리티 혁신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23. 10. 19. 시행)

- 첨단모빌리티 현황조사 방법, 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 규제확인 및 실증특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

■ 문제점

- (지원센터 지정요건) 모빌리티 혁신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모빌리티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으나 그 지정요건에 객관성·예측가능성 결여
 - 인력·기술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가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를 모빌리티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어 법령에 규정된 기준에 의하지 않고 국토교통부가 임의적·자의적으로 지정 가능
 - 기관의 업무가 법령에 의해 규정되며 그 임직원에게 대해 형법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어 공공성을 갖춘 기관을 모빌리티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에 대한 제한 없음
- (위원회 운영사항) 실증특례의 부여, 법령·규제 개선 등을 위해 구성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의 운영사항에 객관성·공정성 결여 우려
 -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없어 안전과 사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 등이 심의에 참여할 우려 등 이해충돌방지 미흡
 - * 법률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형법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며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특정 사유 발생 시 해촉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하여 공공성을 갖추고 있음
 - 위원회의 운영사항에는 안전의 심의·의결 결과를 성립시키는데 필요한 의사·의결정족수 규정이 포함되어야 하나 관련 규정 부재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① (제4조제3항 수정)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빌리티 혁신의 효율적 지원에 필요한 인력·기술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모빌리티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
- ② (제12조 추가)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성립시키는데 필요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 규정 추가

- ③ ~ ⑤ (제12조 추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추가
 - (제척) 위원회의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자는 그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
 - (기피)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 결정
 - (회피) 제척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조사의 심의·의결에서 회피
- ⑥ (제12조 추가) 제척대상인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위원이 회피를 신청하지 않고 안전의 심의·의결에 참여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해촉 요건 추가

■ 개선권고 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0. 19.] [대통령령 제33718호, 2023. 9. 12., 제정]

제4조(모빌리티지원센터의 업무 등) ①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을 말한다.

③ (생략)

제16조(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④ (생략)

⑤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모빌리티혁신위원회 위원 제척·기피·회피) ①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조사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모빌리티혁신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모빌리티혁신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8조(모빌리티혁신위원회 위원 해촉) 위원장은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이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3)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개요

- 급변하는 행정환경으로 인해 적극행정의 필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어 법령 등에 내재하는 소극행정 유발 요인을 이를 사전에 제거할 필요성이 있음
- 법령상 근거 부재 등으로 인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인 업무 행태가 발생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지 평가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적극행정 운용규정」 제2조제2호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3호)

평가방법

- 법령상 근거 부재로 인한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검토
 - 평가대상 법령의 상·하위 법령을 검토하여 상위 법령의 위임이 있음에도 하위 법령에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등 법령상 근거 부재 인해 소극행정이 유발될 위험성이 있는지 검토
 -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해 공무원의 부작위, 업무해태, 자신 또는 소속기관만을 위한 자의적인 업무처리 등 소극행정이 유발될 위험성이 있는지 검토
- 소극행정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도입 검토
 - 처리기한 규정, 민간 전문가 참여기회 확대 등 공무원의 업무해태 또는 불합리한 업무관행의 반복 등 소극적인 업무행태를 억제할 수 있는 각종 제도 또는 절차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평가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법령상의 근거 부재로 인해 공무원의 부작위 등 소극행정이 유발될 위험성이 있는가?	
☐ 불명확하게 규정된 법령상 각종 요건 등으로 인해 소극행정이 유발될 위험성이 있는가?	
☐ 특별한 사유 없이 소관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처리하는 등의 행태를 유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가?	
☐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자신 또는 소속 기관의 이익을 위해 자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태를 유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가?	
☐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 또는 절차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가?	

사례 이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11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법 제21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시행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

평가기준 :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재량의 구체성·객관성

현 황

- 법 제21조제7항은 단서에서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의결로써 사회보장위원회(본 위원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동 시행령 개정령안은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위원회¹⁾ 의결로써 위원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²⁾에 제3호와 제4호로써 다음의 두 경우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 ①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하는 사항
- ②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

* 소관 부처(서) 확인 결과, 현재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에 위임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계획은 없음

1) 법 제20조(사회보장위원회) ①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법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⑥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현행) 시행령 제11조(실무위원회 설치 등) ② 법 제21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시행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문제점

- 신설되는 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에, 실무위원회 의결로써 본위원회 의결을 대신할 수 있게 되는 경우로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있는데, 위원장은 위원장 의사만으로 의결 없이 위원회 전체 의사를 대신할 수 없음
 - 본래는 본 위원회 의결이 원칙임에도 그 사안이 “경미” 하기 때문에 (본 위원회 의결없이) 실무위원회 의결로 갈음하는 사항을 판단할 때, 그 “경미함” 여부를 위원장이 단독으로 정하는 경우 사적 이해관계 등에 의해 본 위원회 기능을 형해화시킬 수 있고
 - 또한,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규정이 운용될 경우, 실무위원회 의결로 갈음하는 “경미함”의 판단 논리 부재로, 본 위원회 의결을 요하는 경우에도 위원장이 위임하기만 하면 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들어 실무위원회 의결이 빈번해질 가능성 존재
 -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기준에도, 실무위원회는 본 위원회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 위원회와 구성원이 동일하지 않은 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본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간주하는 규정은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음

참 고

◆ 「법령입안·심사기준(2021)」 제2장 실체규정 22. 위원회

분과위원회나 소위원회와는 달리 실무위원회나 전문위원회 등은 본 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되고, 그 기능 및 역할도 본 위원회에서 심의되는 사건에 대한 사전 조사·연구·검토·조정 등으로 제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실무위원회나 전문위원회 등은 본 위원회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 본 위원회와 구성원이 다른 실무위원회나 전문위원회 등의 심의·의결을 본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간주 하는 경우 본 위원회의 기능을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실무위원회나 전문위원회 등의 심의·의결을 본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간주하는 규정은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424페이지 하단~ 425페이지 상단)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거나,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아닌 “위원회가 정하여 위임하는 사항”으로 수정하고 “위원회가 정하여 위임하는 사항”을 하위규정(ex : 의결로써 정한 위원회규정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할 것.

개선권고 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 7. 11.] [대통령령 제33629호, 2023. 7. 11., 일부개정]

제11조(실무위원회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법 제21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시행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지 않은 범위에서의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 ③ ~ ⑧ (생략)

사례 02 도서관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18조(도서관자료의 보상 절차 등) ① 제15조제5항에 따라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제출하는 자나 제16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 수집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도서관자료(제16조에 따른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청구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청구서를 받으면 도서관자료의 시가(市價)에 납본 또는 수집된 도서관자료 중 이용자의 열람에 제공되는 도서관자료의 부수를 곱한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정가(定價)를 표시한 도서관자료에 대해서는 정가를 시가로 본다.

③ ~ ⑦ (생략)

제21조(국립장애인도서관에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 제출) ① (생략)

②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디지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서를 국립장애인도서관의 관장(이하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디지털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디지털자료를 제출한 자는 해당 디지털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상청구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⑤ ~ ⑥ (생략)

■ 평가기준 :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공개성

■ 현 황

- 개정안은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도서관자료 등의 보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도서관자료(도서 등) 발행 자는 납본 의무가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부자로부터 보상청구서를 받은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
 -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온라인 자료 제공자로부터 보상청구서를 받은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

도서관법

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③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납본 대상 도서관 자료의 선정·종류·형태·부수와 납본 절차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온라인 자료의 수집)

⑤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온라인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선정·종류·형태와 수집 절차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제점

- 도서관자료 등의 보상에 대한 사전 안내 규정 부재
 -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자료 납본자 등으로부터 보상청구서를 받은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 해당 절차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 등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볼 우려가 있으며, 사전 안내 규정의 부재로 보상과 관련한 소극행정을 유발할 가능성 존재
 - 「도서관법」상 국립중앙도서관의 정당한 보상은 의무사항인바, 사전 안내를 통해 법률의 취지에 맞는 행정 집행 필요

검토결과 : 개선권고

- 보상과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규정하여 보상 절차를 몰라 피해 보는 사례를 예방하고, 소극행정 유발 요인 차단

■ 개선권고 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도서관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2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18조(도서관자료의 보상 절차 등) 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5조제6항에 따라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제출받거나 제16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 수집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본서를 제출한 자나 수집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게 보상 청구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 ⑧ (생략)

제21조(국립장애인도서관에 대한 디지털파일자료 제출) ① ~ ② (생략)

③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립장애인도서관의 관장(이하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라 디지털파일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증명서를 발급하고, 보상 청구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④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기준은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디지털파일자료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2021년 평가 사례임



PART

2023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Corruption Risk Assessment casebook 2023

● 참고자료

1.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2.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3. 관련 법령
 -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 2) 부패영향평가 운영지침



01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준 수 <수요측면>

(1) 준수부담의 합리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각종 부담·희생 등을 수반하는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적용 대상 및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에 있는가?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부담 부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 준수부담의 범위와 정도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수준인가?	
☐ 일부에 국한된 문제해결을 위해 다수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상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 벌금 등 이중부과로 인한 중복부담은 없는가?	
☐ 준수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결할 수는 없는가?	

(2) 제재규정의 적정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유사 법령 및 제재대상 행위의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제재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 또는 피해규모가 다른 방법(예 : 민사 또는 사적 자치)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 다른 법령의 유사한 사례,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과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강하거나 약한 경우 그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가?	
☐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법령 위반 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준인가?	
☐ 제재수준이 미약한 경우 부패행위 억제 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가?	
☐ 제재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한 제재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부패 등 위반행위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당해 제재내용 이외에 다른 효과적인 제재 방법은 없는가?	

(3) 특혜발생 가능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법령 등이나 그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누군가에게 어떤 혜택이나 이익(법률상·사실상의 이익 포함)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 수익을 부여하는 요건·대상·절차·목적 등이 명확하고 공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혜택이나 이익 수혜대상이 여타 다른 법령과 비교·검토시 특정 계층이나 기업·단체 등에 한정되어 있는가?	
☐ 혜택이나 이익 등의 부여내용·정도가 타 법령 등의 유사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한 것은 아닌가?	
☐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는 특혜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은가?	

집행 <공급측면>

(1)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재량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당해 법령 또는 하위규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 행사절차 등이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법령 수준에서 규정되어야 할 주요 재량기준 또는 행사절차들이 훈령·예규·고시·지침 등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법령 등의 적용대상집단·이해관계자는 행정실무자가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재량기준(업무처리기준)을 이해하고 있는가?	
☐ 구체적 재량기준 또는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세부기준 없이도 직접 적용 가능한가?	
☐ 법률이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나 고려사항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에 위임하는 경우 그 위임은 포괄적이지 않고 구체적·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재량권의 행사범위가 타 법령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는 않은가?	
☐ 법적 근거 없이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가?	
☐ 법령에 의하여 하위법령이나 행정규칙으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여야 할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가?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은 없는가?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치가 있는가?	
☐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2)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위탁·대행을 실시하는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대상사무의 범위가 상위 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 (재위탁의 경우 원위탁자의 승인절차의 규정여부 등)에 있는가?	
☐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대행의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등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위탁·대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 위탁·대행으로 대상사무의 공익·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는 없는가?	
☐ 위탁·대행의 대상기관, 선정기준 및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공정한가?	
☐ 수탁·대행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있는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타당하고 내용이 적절한가?	
☐ 위탁·대행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하고 있는가?	
☐ 법정 위탁·대행의 경우가 아닌 지정 등을 통해 수탁·대행자가 선정되거나 취소된 경우 이를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위탁·대행 기간 및 연장 가능 횟수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계속적·형식적·독점적인 위탁·대행의 반복으로 부패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 위탁·대행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수탁·대행기관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을 위한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가? - 자료제출·보고 의무 및 감독기관의 정기점검 등	
☐ 수탁·대행 기관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시 위탁·대행 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 수탁·대행 기관의 위법 행위시 위탁·대행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재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위탁·대행 취소 등에 대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 업무성격상 책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수탁·대행기관의 임직원에게 대한 벌칙적용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는가? - 취소와 정지사유 구분 임의취소와 당연취소 구분 여부 등	
☐ 수탁·대행기관의 위법 행위시 위탁·대행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한 보조금 등에 대한 회수규정이 있는가? - 제재부가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검토	

(3) 재정누수 가능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및 요건은 구체적인가?	
☐ 지원방법(계약방식 등)은 지원의 성격에 부합하는가?	
☐ 타 법령에 유사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해당 재정지원이 필요한가?	
☐ 지원수준은 다른 지원과 비교하여 적절한가?	
☐ 지원자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 설정 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해당 세부기준은 공개되어 있는가?	
☐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 결정절차, 선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는가?	
☐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선별할 수 있는 평가수단은 마련되어 있고, 위 평가의 공정성 확보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 지원된 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출관련 증거자료의 보관, 사업 결과 제출의무 등은 규정 되어 있는가?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것을 막기 위한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 지원처분 취소절차 등	
☐ 위법한 목적외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 환수나 일정기간 지원제한 조치	
☐ 징벌적인 추가 환수조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 지원금의 ○배 추가 환수 등	

행정절차 <절차측면>

(1) 접근의 용이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국민 참여를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 별도의 참여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편리한가?	
☐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 행정의 참여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 별도의 참여장치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참여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	

(2) 공개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정보공개 제도를 두고 있는가?	
☐ 정보공개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 또는 민원인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가?	
☐ 정보공개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 별도의 정보공개 제도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정보공개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	

(3) 예측가능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기간과 처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에 대해 당해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가?	
☐ 평가대상 법령 및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의 표현이 전반적으로 일반국민의 수준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가?	
☐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의 사용은 일반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 민원신청시 필요한 요건·절차·기한 등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분명한가?	
☐ 조건부 인·허가, 사전 인·허가 등 내인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내인가 가능여부, 신청 요건, 신청절차, 처리기한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	
☐ 관계기관의 협의·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이 누구인지, 협의·승인의 기준은 무엇인지,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민원인이 업무처리절차 또는 업무처리기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이나 도움 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가?	

부패통제

(1) 이해충돌가능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업무수행에 있어 부당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이해관계의 가능성이 있는가?	
☐ 위원 등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임기, 연임제한 등을 규정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는 데서 오는 유착관계 형성을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해당 사안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사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제척 제도의 규정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 이해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겸직금지나 영리 행위금지 규정이 있는가?	
☐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 관련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 심의 등에 공정성을 해친 자를 제재하기 위한 해촉 규정을 두고 있는가?	
☐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시 뇌물죄 등 형벌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위원회 회의자료를 작성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2)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평가대상 법령상 업무 및 유사업무와 관련하여 부패사례가 없었는가?	
☐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 부패방지장치가 있다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가? - 관련 규정 및 실제 운영사례 검토	
☐ 부패방지장치가 있음에도 부패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가?	
☐ 별도의 부패방지장치가 없다면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부패방지를 위한 별도의 내부통제장치 도입이 필요한가?	

(3)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공무원의 부작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법령상 근거 부재가 있는가?	
☐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공무원의 직무태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합리한 법령상 근거 규정이 있는가?	
☐ 특별한 사유 없이 소관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느장 대응하는 행태로 이어질 수 있는 규정이 있는가?	
☐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과 소속 기관의 이익을 위해 자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태로 이어질 수 있는 규정이 있는가?	
☐ 공무원의 행위 등에 있어서 소극적인 해석을 유도하여 입법목적의 실현을 저해하는 규정이 있는가?	

02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1) 인·허가, 승인·지정 등 업무¹⁾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기준·절차	☐ 인·허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처리절차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인·허가 등에 대한 처리권자의 재량범위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인·허가 등에 대한 공무원의 재량권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처리 기간	☐ 인·허가 등의 처리기간은 합리적인가? (준수부담의 합리성) - 장기의 처리기간으로 인한 급행료지급, 음성적 청탁 등 부패발생 가능성 검토	
	☐ 인·허가 등의 처리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예측가능성)	
신청서류 등	☐ 인·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신청서류, 준비사항, 대기시간 등 민원인의 준수부담은 사회통념이나 유사업무와 비교할 때 합리적 수준인가? (준수부담의 합리성)	
	☐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청서류, 준비사항, 처리기준 및 처리절차 등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수준인가? (예측가능성)	

1)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업무로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의 업무를 포함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이의제기	☐ 위법·부당한 인·허가 및 그 거부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접근의 용이성)	
정보공개	☐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가? (공개성) - 인·허가 처리기준, 처리과정, 처리결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관리·감독	☐ 인·허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시험·검사 이후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후 관리·감독 규정을 두고 있는가?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 인·허가 이후 각종 지시, 시정명령, 보고 등 사후 관리·감독의 요건·기준 및 종류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제재	☐ 민원인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행정제재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 취소, 정지,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 민원인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수준은 유사업무에 규정된 제재수준에 비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 위반행위별 또는 행정제재 유형별로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인·허가 의제	☐ 인·허가 등의 의제 조항을 규정함에 있어 관계기관 협의·이해관계인 의견청취·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충분히 규정하지 않는 등 인·허가 의제 효과의 인정과정에서 특혜 우려가 있는가? (특혜발생 가능성)	

(2) 부과·징수 업무²⁾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 · 기준 · 절차	☐ 부과·징수의 법적근거, 요건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부과·징수 금액의 산출기준, 산출방식 및 산출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법령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행정처분 부과(예.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등)의 경우 제재 수준이 유사사례와 비교하여 적절한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 부과·징수 절차상에 인정되는 공무원의 재량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인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의 사유, 기간 및 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있는가? (예측가능성)	
가중 · 감면	☐ 행정처분 등의 가중·감면 시 이에 대한 판단기준이 구체적이고 처분 기준일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공무원이 가중·감면 기준, 비율, 기간 등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특혜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가? (특혜발생가능성) - 가중·감면의 적용방식(비율산정, 적용순서 등), 시행시기, 소급적용 여부가 적절한지 검토	

2) 인·허가 등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등 각종 행정처분 관련 업무

* 과태료의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부과·징수 절차 및 불복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개별법에서는 부과요건과 부과권자 등에 관한 규정만 두면 됨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이의제기	☐ 부과·징수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접근의 용이성)	
	☐ 민원인이 이의제기를 하고자 할 때 준비해야 하는 구비서류·준수사항 등 이의제기 절차와 방법은 까다롭지 않고 용이한가? (준수부담의 합리성)	
환급	☐ 과오납 및 환급금 지급·신청과 그에 대한 지급대상(과오납금의 양도)·처리 기간·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측가능성)	
	☐ 과다징수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지급 및 산정 기산일 등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측가능성)	
체납처분	☐ 압류, 공매, 환가처분 등 체납처분 과정에서 공무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대상선정, 조사방식, 절차 등의 규정이 구체적인지 검토	

(3) 보조·지원 업무³⁾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기준	☐ 보조·지원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정누수 가능성)	
	☐ 보조·지원의 목적, 대상, 사용한계(목적외 사용금지)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정누수 가능성)	
	☐ 보조·지원 명목으로 보조·지원 대상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부관을 부과할 여지는 없는가? (준수부담의 합리성)	
대상 선정	☐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 결정절차, 선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는가? (재정누수 가능성)	
	☐ 보조·지원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수단은 마련되어 있고, 위 평가의 공정성 확보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재정누수 가능성)	
지원 적정성	☐ 보조·지원은 다른 지원과 비교하여 적절한가? (재정누수 가능성)	
	☐ 타 법령에 유사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해당 지원이 필요한가? (재정누수 가능성)	
이의제기	☐ 위법·부당한 보조·지원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접근의 용이성)	
정보공개	☐ 보조·지원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조·지원의 대상, 규모, 절차, 결과 및 성과평가 등을 공개하는 규정이 있는가? (공개성)	
관리·감독	☐ 보조·지원 경비가 행정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도록 적정한 관리·감독·정산·성과평가 등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는가? (재정누수 가능성)	
제재	☐ 보조·지원 경비의 불법·부당집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재정누수 가능성) - 처벌규정(벌칙규정),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지원금 환수, 수혜자격 배제	

※ 재정지원은 그 형태가 다양하고 근거법을 또한 상이하므로 재정지원 양태에 따라 일반법 등 관계법령⁴⁾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중복규정이 되지 않도록 유의

3) 보조·출자·출연·융자, 국·공유재산의 사용·대부, 국유재산법상의 특례 등 각종 재정지원 업무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등

(4) 위탁·대행 업무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 · 기준 · 절차	☐ 위탁·대행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위탁·대행 기준·요건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재량권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위탁·대행 대상사무의 범위와 그 한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상위 법령의 위임에 의해 위탁·대행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위탁·대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위탁·대행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재위탁	☐ 재위탁의 경우 원위탁자의 승인절차가 규정되어있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재정지원	☐ 수탁·대행업자에 제공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사회적 통념이나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인가? (재정누수 가능성)	
이의제기	☐ 위법·부당한 위탁·대행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접근의 용이성)	
정보공개	☐ 위탁·대행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하고 있는가? (공개성) - 위탁·대행 대상업무, 대상기관, 시행절차 및 운영성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 여부 확인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관리·감독	☐ 위탁·대행의 행정목적이 달성되도록 대상기관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을 위한 절차적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자료제출·보고 의무, 조사·감독 권한, 시정명령권	
	☐ 수탁·대행 업무와 관련한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 시 감독 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제재	☐ 수탁·대행 기관 또는 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대비해 충분한 제재수단이 구비되어 있는가? (제재 규정의 적정성,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공무원 의제 등 처벌규정(벌칙규정), 지정취소·업무정지·지원금 회수 등 행정처분, 계약해지	
기타	☐ 위탁·대행으로 대상사무의 공익·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는 없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수탁·대행업자에게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준이상으로 과도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준수부담의 합리성)	
	☐ 계속적·형식적·독점적인 위탁·대행의 반복으로 부패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5) 행정조사 업무⁵⁾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 · 기준 · 절차	☐ 조사권 행사의 법적 근거, 조사요건, 조사주체 및 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⁶⁾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자의적인 대상선정 및 제외·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정 기준 존재여부	
	☐ 조사 기간·방법·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측가능성) - 조사대상범위, 조사기간, 기간연장시 사유설명 의무 등의 규정 확인	
	☐ 조사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준수부담은 지키기 적당한 합리적 수준인가? (준수부담의 합리성)	
이의제기	☐ 위법·부당한 조사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접근의 용이성)	
정보공개	☐ 조사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 (공개성) - 조사대상·내용·기간 및 결과, 처분내용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 무단·임의 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실시 전 사전통보 규정을 두고 있는가? (공개성) - 사전통보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 예외사유가 타당한가?	

5) 「행정조사기본법」에서는 ‘행정조사’를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있으나, 단순 실태조사 등 명령이나 강제를 수반하지 않는 행정조사 외에도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명령·강제를 수단으로 하는 권력적 행정 조사도 있음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제재	☐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제재 판단기준이 유형별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 임의감면 등 부당한 재량을 차단하기 위하여 행정제재의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 수준이 유사업무에서 정한 다른 제재와 비교해 볼 때 적절한 수준인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기타	☐ 조사결과를 보고 및 사후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폐·축소 등의 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보고의무, 처리기한, 관계기관에 대한 처리요구, 해당업체에 대한 통보 등	
	☐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조사정보 사전유출, 대상자 선정 제외, 조사결과 은폐·묵인, 임의감경 등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외부참여 합동조사, 공익신고자 보호절차, 신고포상제도, 내부 감사·감찰기능 등	

6) 「행정조사기본법」에서 행정조사의 대상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세무조사나 금융감독기관의 검사·조사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은 이 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음(제3조제2항)

7)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및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음

(6) 단속·점검 업무⁸⁾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 · 기준 · 절차	□ 단속·점검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시행요건, 시행주체 및 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단속·점검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재량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인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단속·점검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자의적인 대상선정 및 제외·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정 기준 존재여부 검토	
	□ 단속·점검의 기간·방법·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측가능성) - 무단·임의방문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실시전 사전통보 - 대상범위, 기간, 연장사유 등에 대한 명시 및 설명의무 확인	
	□ 단속·점검의 실시대상 업체에게 부과된 준수부담은 지키기 적당한 합리적 수준인가? (준수부담의 합리성)	
이의제기	□ 위법·부당한 단속·점검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 절차는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접근성의 용이성)	
정보공개	□ 단속·점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 공개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 (공개성) - 대상자, 시행기간, 시행결과(위반내용), 처분내용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8)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은 이유로 부담적 행정행위를 발하는 경우나 사실상 강제력을 갖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지도의 경우는 본 체크리스트 활용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제재	☐ 단속·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경고 등 행정제재 판단기준이 유형별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 임의감면 등 부당한 재량행사를 차단하기 위해 행정제재의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 단속·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 수준이 유사업무에서 정한 다른 제재와 비교해 볼 때 적절한 수준인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기타	☐ 단속·점검 결과 보고 및 사후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폐·누락 등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보고의무, 처리기한, 관계기관에게 통보 및 처리요구, 해당업체에 대한 통보 등	
	☐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단속정보 사전유출, 위법행위 묵인, 임의감경 등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외부참여 합동단속, 공익신고자 보호절차, 신고포상제도, 내부 감사·감찰기능 등	

〈 참고 : 단속·점검분야 예시 〉

풍속영업분야	식품·위생분야	환경분야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 비디오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 무도장 및 무도학원 등	식품판매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즉석판매식품가공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등	대기·악취배출업소, 폐수배출·처리업소, 오수·분뇨처리업소, 폐기물배출·처리업소, 소음·진동배출업소, 유독물영업소 등

(7) 각종 위원회 관련 업무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구성	☐ 위원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한 배제 조항 확인	
	☐ 위원 추천자 및 후보자에 대한 심사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위원위촉 및 활동 과정에 관련협회, 특정 이해관계자 등의 개입으로 특혜를 유발하거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은 없는가? (특혜발생 가능성)	
	☐ 위원 구성시 내부·외부 위원의 구성비율은 적절한가? (이해충돌가능성)	
	☐ 외부위원으로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있는가? (이해충돌가능성)	
	☐ 기관장의 위원장 겸임 또는 위원 단독위촉 권한은 필요하고 적절한 수준인가? (이해충돌가능성)	
임기 및 신분	☐ 위원의 임기 및 연임차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가? (이해충돌가능성) -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및 특혜소지 차단을 위해 임기, 기간의 적정성, 연임규정 유무 확인	
	☐ 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가? (이해충돌가능성) - 윤리규범, 청렴서약서제출, 겸직금지, 비밀엄수, 정보이용금지 등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제척 · 기피 · 회피	☐ 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이해충돌가능성)	
제재	☐ 이해충돌 상황에서 회피를 하지 않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자를 제재하기 위한 해촉규정을 두고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이해충돌가능성)	
	☐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시 뇌물죄 등 형벌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이해충돌가능성)	
이의제기	☐ 위원회 심의·결정 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접근의 용이성)	
정보공개	☐ 회의록 작성·보존 및 회의결과 요약 공개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공개성)	
	☐ 위원 위촉과정 및 위원회 활동정보를 구체적·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는가? (공개성)	

(8) 인사 업무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인사 기준	☐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기본방침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과정에서 기관장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별도의 통제장치를 규정하고 있는가?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인사 위원회	☐ 인사(승진심사, 징계)위원회 구성시 (이해충돌가능성) - 외부위원 구성비율, 임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위원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인사(승진심사,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대한 녹취, 기록, 보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특별임용	☐ 특별임용 조항이 있는 경우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특별임용의 실시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 특별임용 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한 배제 조항 확인 - 특별임용 대상자 선정 및 평가 방법 등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특별임용계획 및 일정, 임용방법 등을 사전에 공개하고 있는가? (공개성) - 특별임용결과를 사후공개하고 성과를 분석·관리하고 있는가? (공개성)	
기관장 재량	☐ 임용·승진·평가 등에 있어 기관장에게 별도의 가점부여(인정)재량을 허용하는 등 부당한 규정은 없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기관장에 의한 임의적 감경·보복, 징계위원회 회부결정 재량은 없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 또는 불회부”, “사안이 경미한 경우 불회부” 등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이의제기	☐ 인사과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 (접근의 용이성)	
정보공개	☐ 인사정보 공개와 관련 (공개성) -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 공개규정이 있는가? - 사전 공개하는 시점은 관련자의 접근성과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 인사방침 결정 및 변경시 적정한 기간동안 적용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가? - 모집대상직위, 예상결원, 대상인원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가?	
제재	☐ 임용·승진·전보 등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 관련 당사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 출서기, 청탁, 밀어주기, 금품·향응제공 등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제재 규정 확인	
기타	☐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정실인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외부의 통제 장치는 있는가?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03

관련 법령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법 률	시 행 령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 2.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 내부규정 ②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부패유발요인의 검토) ①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이하 이 조에서 “법령등”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이하 “부패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1. 부패유발의 가능성 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 여부 나. 법령등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 다.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 2. 법령등 준수의 용이성 가. 국민·기업·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 법령등의 위반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다.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타당성 여부 3. 행정절차의 투명성 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 나. 준비사항·처리절차·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법 률	시 행 령
	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계획 등에 관한 부패영향평가지침을 수립하여 해당 법령등의 소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법령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9조 제4항에 따른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에게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치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치기한까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⑥ 위원회는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에게 법령등의 부패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은 성실하게 이에 응해야 하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부패영향평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법 률	시 행 령
	⑨ 법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 단체의 장은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을 포함한다)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직 유관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전문성·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부패영향평가 결과의 관계기관 통보) 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가 「행정 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 규제심사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가 「법제 업무운영규정」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른 법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정비·개선에 참고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제처에 통보하여 법제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2)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제정 2008. 4. 17.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 3호
개정 2010. 4. 5.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 34호
개정 2011. 10. 7.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 45호
개정 2012. 10. 25.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 53호
개정 2013. 6. 11.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 58호
개정 2015. 1. 1.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 72호
개정 2015. 3. 31.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 75호
개정 2015. 11. 13.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 90호
개정 2019. 10. 8.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81호
개정 2020. 5. 11.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11호
개정 2020. 9. 14.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31호
개정 2020. 11. 4.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39호
개정 2022. 4. 29.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74호
개정 2023. 4. 10.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30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라 함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1. 원안동의 :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동의
2. 개선권고 :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권고

3. 철회의견 :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제3조(평가대상)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제정 또는 개정안(이하 "제·개정 법령안"이라 한다)
2.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훈령·예규·고시·공고의 제정 또는 개정안을 포함한다)와 조례·규칙 및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를 요청한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이하 "제·개정 자치법규안"이라 한다)
4.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평가를 요청한 공직유관단체의 사규·정관 등(제정이나 개정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내부규정(이하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2(평가대상 제외법령 등) ① 제·개정 법령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법령(이하 "제외법령"이라 한다)에 해당되더라도 필요시 위원회는 직권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헌법기관이 행하는 사항에 대한 법령
 2. 국가보안, 예비군·민방위, 국토·통일, 국호·국기·연호, 전례·국경일 등 국가의 안보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령
 3. 직제, 후생복지, 제안제도, 급여·수당·문서·관인·차량 관리 등 행정기관의 설치·조직·기능 및 내부운영에 관한 법령
 4. 폐지법령, 알기 쉬운 법령 등 정부정책결정에 따라 동시에 일괄 개정되는 법령
 5. 그 밖에 고도의 정책추진사항 및 부패유발요인과 명백히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법령
- ② 위원회는 제외법령의 시의성 제고 및 정책 환경 변화 등 제외법령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경우 제외법령을 지정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제외법령은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④ 위원회는 제외법령에 대한 평가의뢰를 받은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령임을 평가를 의뢰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4조(평가기준) 평가대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별표에 따른 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에 유의하여 판단한다.

제2장 부패영향평가 처리 절차

제1절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제5조(법령안 및 기초자료의 접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개정 법령안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이하 "기초자료"라 한다)를 첨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평가 의뢰 문서를 접수한다. 다만, 제정 또는 전부개정 법령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이하 "세부자료"라 한다)까지 첨부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부처전담제 실시) ① 평가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담당자별로 각 소관기관을 전담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② 평가 의뢰 문서를 접수한 문서수신 담당자는 업무 분장에 따라 지정된 평가담당자에게 이를 전달한다.

제7조(자료의 보완 및 평가서 작성) ① 평가담당자는 평가 의뢰서가 접수되면 제출된 자료의 누락여부 및 기초자료·세부자료 작성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제출되지 아니한 자료가 있거나 제출된 자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소관기관에 자료의 추가제출 및 보완을 요구한다.

② 평가담당자는 소관기관이 제출한 제·개정 법령안 및 기초자료·세부자료를 토대로 평가기준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세부평가서(개선권고, 철회의견 또는 그 밖의 주요 검토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한다.

③ 평가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분석 시 평가 대상 법령의 상위 근거 법령, 평가 대상 법령을 근거로 하는 행정규칙·조례 등 하위 법령 및 관련·유사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한다.

제8조(평가 기한) 평가담당자는 제·개정 법령안의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평가를 마친 후 즉시 소관기관에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제출의 지연이나 소관기관과의 협의 지연 등으로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평가를 마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종료일부터 40일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자문 의뢰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① 평가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전문가등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1. 전문적·기술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사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소관기관과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3. 소관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재평가가 필요한 사항 등 그 밖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평가담당자는 개선권고를 통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개선권고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제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③ 평가담당자는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중요 사항"이라 한다)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

1.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소관기관과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3. 다수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사항

제10조(평가결과 보고 및 통보) ① 평가담당자는 제·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개선권고나 철회의견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부패방지국장의 결재를 받는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하려는 개선권고나 철회의견이 중요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절차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법무담당관의 검토를 받는다.

③ 평가담당자는 제·개정 법령안 전체에 대하여 원안동의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담당과장의 결재를 거친다.

④ 평가담당자는 평가결과에 대한 결재를 완료하는 즉시 소관기관에 평가결과를 통보한다.

⑤ 평가담당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부평가서를 첨부(다만, 원안동의인 경우를 제외한다)한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로 평가결과를 보고하고 소관기관에 통보한다.

⑥ 평가결과가 개선권고나 철회의견인 경우로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 규제심사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⑦ 평가결과가 개선권고나 철회의견인 경우로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른 법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정비·개선에 참고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제처에 통보하여 법제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재평가 절차) ① 소관기관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

1. 소관기관의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
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
3. 소관기관과의 협의·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재평가 요청된 제·개정 법령안은 당해 법령안의 원평가자 이외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평가를 실시하게 하되,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과별 합동토론 등의 절차를 거친다.

③ 재평가 결과 위원회의 의견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그 결과를 소관기관에 통보한다.

④ 재평가 결과 위원회의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그 결과를 소관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한 경우에는 법무담당관의 검토를 거쳐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위원회 의결절차를 거친다.

- 제12조(이행실태의 확인·점검 등 사후관리)** ① 부패영향분석과장은 연 1회 이상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에 대한 소관 기관의 이행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부패영향분석과장은 이행실태의 확인·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결과 조치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소관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관회의 또는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등 이행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패방지국장의 결재를 받아 사후관리를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사후관리를 종결하고자 하는 대상이 중요사항인 경우 위원회에 보고를 거쳐야 한다.
1. 개선권고를 통보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2. 개선권고 내용이 법제처 법령안 심사, 국회 법률안 심사 등 입법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삭제된 경우
 3. 소관기관이 법령 제·개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4. 다른 법령의 입법을 통해 개선권고 내용이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⑤ 위원장은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절 현행 법령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 제13조(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의 수립·시행)** ① 위원회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 및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내부규정(이하 "현행 법령등"이라 한다)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부패영향분석과장은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법령등의 소관 기관(이하 "소관 기관"이라 한다)에 현행 법령등에 대한 평가대상과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부패영향분석과장은 소관 기관이 작성·제출한 평가대상과제를 접수하여 관리한다.
- ④ 위원회는 각 기관이 제출한 평가대상과제를 토대로 소관기관과 협의하여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수립한다.
- ⑤ 위원회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각 소관기관에 통보하고 소관기관으로부터 평가일정에 따라 평가대상 법령등에 대한 기초자료·세부자료를 제출받아 평가를 실시한다.

- 제13조의2(현행 법령등 부패영향평가)** 위원회는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과 별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 법령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부패·비리 사건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거나 사회적 관심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구조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는 부패취약분야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
 3. 국가시책으로 중점 추진되거나 예산지출이 증대되는 등 부패유발요인의 제거·보완이 시급히 요청되는 경우
 4.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과정에서 당해 또는 관련 현행 법령등에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자료의 보완 및 평가서 작성 등) 현행 법령등의 부패영향평가를 위한 자료의 보완·평가서 작성 및 자문 의뢰에 관하여는 제5조, 제7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15조(자료 제출요구·실태조사 등) ① 평가담당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공기관에 업무편람, 징계·감사·수사결과 및 민원처리현황 등 평가에 관련된 자료·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평가담당자는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감사·수사결과 및 민원처리현황 등 평가에 관련된 자료·서류에 대한 문헌조사 등의 예비조사를 한 후 관련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하거나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소관기관과의 협의 및 의견수렴) 평가담당자는 법령운용의 실태에 대한 분석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개선권고안에 대하여 소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단체,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과의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7조(개선권고안 보고 및 위원회 의결) ① 평가담당자는 개선권고안이 중요사항인 경우에는 소관기관과 협의하기 전에 위원장에게 중간보고를 할 수 있다.

② 평가담당자는 소관기관과의 협의를 마치면 그 결과 등을 반영한 개선권고안을 법무담당관의 검토를 거쳐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는다. 다만 제13조의2제4호에 해당하여 제·개정 법령안과 함께 현행법령 등에 대한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8조(개선권고 통보 및 재평가 등) ① 평가담당자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개선권고를 위원회의 의결서사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소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재평가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③ 사후관리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여건의 변화 등으로 사후관리를 종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보고를 거쳐 종결할 수 있다.

제3절 제·개정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제19조(제·개정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 ① 위원회는 제·개정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요청이 있는 경우에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개정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절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 제20조(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에 대한 평가)** ① 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부터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소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개정되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안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현행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 제9조 및 제14조부터 제17조제2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장 부패영향평가 자문

- 제21조(자문기구의 구성)** ① 위원회는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자문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기관·단체 등이 추천하거나 위원회에서 공모 등의 방법으로 선정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다.
1. 대학·연구기관·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부패방지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
 2.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기술사·세무사 또는 관세사 등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부패방지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3. 그 밖에 학회 또는 협회에 소속된 자 등 제1호나 제2호의 자격요건에 상당하는 전문성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22조(자문 의뢰)** ① 평가담당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자문기구에 속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제2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외부전문가 풀(Pool)에 등록된 외부전문가(이하 "전문가등"이라 한다)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 ② 자문하려는 내용이 중요 사항인 경우에는 복수의 전문가등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 제23조(자문 방식)** ① 평가담당자가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자문 요청서에 따른다.
- ② 평가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등을 대상으로 토론회나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중요사항에 관해서 토론회나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2인 이상의 전문가등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③ 평가담당자는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수시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4조(자문 수당) 평가내용에 관한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통보한 전문가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제25조(운영세칙) 이 예규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기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문서·자료 및 역량 관리

제26조(문서 관리) ① 평가담당자는 평가 관련 문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접수년도 및 일련번호 등을 구분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② 평가담당자는 평가 의뢰 문서가 접수된 때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생산되는 일련의 평가관련 문서 및 자료 등을 청렴포털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제27조(부패실태자료 수집·관리) 부패영향분석과장은 평가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청렴도 측정결과, 부패공직자 종합자료통계 및 위원회 신고심사 실적 등 부패실태자료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28조(부패영향평가 관련 정보 관리) 부패영향분석과장은 평가에 관련된 접수내용, 자문현황, 평가결과 등을 청렴포털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제28조의2(부패영향평가 역량 관리) ① 위원회는 평가담당자의 평가기법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부패영향평가 역량을 제고하고, 각급 기관의 자율적인 부패유발요인 발굴과 제거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하 부칙 생략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Corruption Risk Assessment Casebook 2022

발 행 처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부패영향분석과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제7-2동

전 화 | 044-200-7660

홈페이지 | www.acrc.go.kr

2023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정부세종청사 7-2동 www.acrc.go.kr